



2024. 08. 19.

국회입법조사처 |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Ⅰ 총괄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Ⅰ 분야별 총괄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심정희 (기획관리관)
Ⅰ 기획 및 편집위원	조규범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태규 (총무담당관) 강준희 (기획협력담당관) 이정진 (정치의회팀장) 김선화 (법제사법팀장) 김현식 (외교안보팀장)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김효진 (금융공정거래팀장) 김승현 (재정경제팀장)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 박준환 (국토해양팀장) 한인상 (환경노동팀장) 정진철 (교육문화팀장)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
Ⅰ 작성	배재현·임준배·류영아·고영준·조종오·김가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이정진·허석재·송진미·오창룡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준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Ⅰ 편집	김효승 (행정안전팀 행정실무원) 공희정 (정치의회팀 행정실무원)



제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부활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과 정책과제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사회안전, 주거, 교육, 물가, 일자리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585개 정책 이슈에 대해 그 쟁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여 구성하고, 특히, 주목해야 할 중점주제 50개를 따로 선정하여 제1권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년도 국정감사가 이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사정으로 해당 부처의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누락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개정된 만큼 향후 개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의 9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관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준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국민과 언론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장 박 상 철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목 차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5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5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8
공공앱 서비스 활성화	10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12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5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문제 해소	1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잦은 고장 해결	21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관리	24
세외수입 징수 강화	27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상향	3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성화 노력	34
고향사랑기부 확산	37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40
공유재산 특례 제한 강화	44
마을기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47
특례시 특례 적극 발굴 필요	50
주민e직접 플랫폼 홍보 필요	5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관련 제도개선 필요	55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	58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개선	63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개선	66
인사혁신처	69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69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필요	73

제Ⅳ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 76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76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정원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79
항색신호 딜레마존 개선방안 검토	82
기동순찰대 실효성 검토	8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88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내실화 필요	91
지역경찰 인력 조정 및 충원 검토	94

소방청 ————— 97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97
112·119 신고대응시스템 고도화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문제 개선	104
국민투표법 개정	106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109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	113
당원권 강화	116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개선	119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개선	122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	125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127
공직선거 투·개표 관리인력 보상방안	130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관련	133
장애인 참정권 보장	136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1
•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42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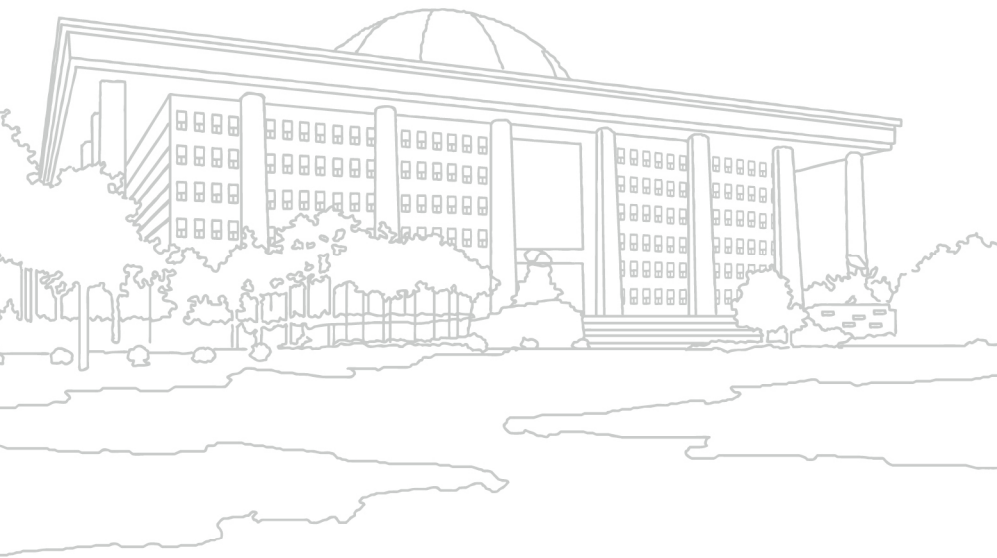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제1부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통신망으로, 국민편의와 행정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을 통해 행정전산망을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함
- 2023년 11월 17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행정망에 연속적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함
 -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3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음¹⁾
- 다만, 2024년 1월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과 4월에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 2024년 5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 등이 발생하며 종합대책 진행과정의 방향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하는 5월에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접속자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전산망 사태 이후 발표한 종합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²⁾

1)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2024.1.31.

2) 이상서·김은경, 「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 … “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 『연합뉴스』, 2024.5.7.

- 행정전산망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임
 - 종합대책에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참여했던 사업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함³⁾
- 종합대책 이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외부 공개가 미비함
 -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오류 내용이나 원인 등을 뒤늦게 공개하는 등 행정전산망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축소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⁴⁾

■ 2023년 이후 1등급 및 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상 발생한 주요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Ⅰ 행정정보시스템 주요 사고 현황 Ⅰ

구분(등급)	발생일자	발생원인
지방행정전산서비스(1등급)	2023.11.17.	광주센터와 대전본원을 연결하는 라우터포트 불량
주민등록시스템(1등급)	2023.11.22. 2024.04.02.	주변기기 매뉴얼 다운로드에 따른 일시적 과부하 지문인증 업그레이드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나라장터(1등급)	2023.11.23. 2023.12.12.	특정 해외 IP주소에서 나라장터 웹서버 집중 접속 투찰 참가자들의 동시 접속
모바일 신분증(1등급)	2023.11.24.	스토리지 유지보수 점검 시 작업자의 단순 실수
KTX예약 홈페이지(1등급)	2023.12.14.	연말연시 승차권 발매 및 운행 조정에 따른 예약일 변경 으로 과다 접속 발생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1등급)	2024.02.14. 2024.02.15.	지방세 묶음 납부 수납건 일부 자료가 금결원과 불일치
정부24(1등급)	2024.03.28. 2024.04.19.	(교육민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오류, 사전테스트 미흡 (납세증명) 프로그램 수정 오류
위택스시스템(1등급)	2024.05.07.	국세청과 연계 구간에 데이터가 누적되어 연계 신고가 지연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시스템 등급 및 사고발생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1.

3) 남혁우, 「“공공SW 잇단 장애, 핵심 문제도 그대로” ... 소프트웨어 B-학점」, 『지디넷코리아』, 2024.5.21.

4) 정민승, 「정부24서 개인정보 1,200건 유출됐는데 한 달 동안 쉬쉬한 정부」, 『한국일보』, 2024.5.5.

2 개선방안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함
 -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국민 이용이 많은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장비에 대한 과감한 교체가 필요함
 - 사용 연한이 지난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의 일부만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전산망 관련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오류 수정이나 장비 최신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
 -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검토하고, 과업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저가입찰’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전체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들여다보며 정보보안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두어야 함
 - 디지털 정부 전환을 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복잡성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계약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문제 진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내 시스템 운용 기관이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공무원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함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고영준

☎ : 02-6788-4565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 : 044-205-270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는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2024년 7월 14일 기준 1,033개 기관, 88,432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⁵⁾
-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OpenAPI,⁶⁾ 표준데이터셋으로 구분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음
 - 일반 파일데이터의 경우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나 활용이 불편한 반면, 다른 데이터 형식에 비해 활용이 편리한 OpenAPI 데이터 중 일부는 로그인을 하고 활용 신청을 해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고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등의 수요에 따른 개방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2024년에는 20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였음⁷⁾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기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여 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됨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

5) 파일데이터 67,532건, 오픈API 11,332건, 표준데이터셋 9,568건 등(공공데이터포털, 『개방현황』(최종 검색일: 2024.7.14.), <<https://www.data.go.kr>>).

6) OpenAPI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의미함.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2024.2.22.

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로 '공공데이터의 가공·분석 기술' 등이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되었음⁸⁾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하여 데이터 표준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⁹⁾

2 개선방안

■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 반영

- 데이터 산업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산업적·국민적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중점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정비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간에 이용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운영을 추진해야 함

- 자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데이터의 표준화, 호환성, 상호연계성 유지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활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데이터 공개 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로그인 후 활용 신청 등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불편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고영준

☎ : 02-6788-4565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 044-205-2461

8)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행정안전부, 2024, p.76.

9) 박우영, 「정부 데이터 양식 일원화… 15종 데이터 추가」, 『뉴스1』, 2024.7.4.

공공앱 서비스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
- 공공앱의 운영타당성을 도모하고, 민간과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앱의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공공앱 개선 및 시정(정비)을 권고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성과측정)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신규서비스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함한 방안임
 -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서비스의 개선 또는 시정(정비)을 권고함
-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673개 공공앱 중 379개가 ‘유지’, 168개가 ‘개선’, 126개가 ‘폐기’로 평가받았음¹⁰⁾
 - 2023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공공앱은 414개이며, 업데이트 최신일자가 2020년 이전인 공공앱의 수는 74개임
 - 2년이상 연속 폐기대상에 해당하는 공공앱은 8개임
- 행정안전부의 ‘2024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29개 서비스를 정비 권고대상으로 선정하였음

10) 행정안전부, 『2023년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mois.go.kr/>>.

- 서비스 폐지 9개, 상생협력 4개, 고도화 중지 12개, 중복기능 제거 2개임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로 정비를 권고한 총 225개 앱 서비스 중 201개가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정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앱서비스도 24개가 있음
- 공공앱 관련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¹¹⁾ 민간앱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개발·제공되는 공공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¹²⁾

2 개선방안

- 공공앱은 앱 개발 및 유지에 예산이 투입되므로 행정기관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함
- 공공앱을 포함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행정안전부와 행정기관은 사전협의 를 하는데, 공공앱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민간서비스와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내실화와 이행상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고영준

☎ : 02-6788-4565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 044-205-272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

☎ : 044-205-2910

11) 김세희, 「“2억 들어 만들었는데”... 공공앱, 절반 이상 ‘폐기 대상’」, 『SBS』, 2024.1.12.

12) 임태우, 「공공배달앱이 더 비싸... 자영업자도 외면 “매출 0원이라”」, 『SBS』, 2024.7.12.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¹³⁾되었음에도,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 자살사건¹⁴⁾을 비롯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처리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¹⁵⁾

Ⅱ 최근 4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 Ⅱ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건 수	38,054	46,079	51,883	41,559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2024.5.2.

- 정부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①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②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③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④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14) 2024년 2월, 김포시 도로 포트를 공사로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한 사건을 말함(OBS 뉴스, 「‘마녀사냥’ 김포시 공무원 극단선택에 추모 물결」, 2024.3.7.).
- 15) 임준배,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실태조사』 제1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10.

Ⅱ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세부내용 Ⅱ

구 분	세부 내용
1.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 마련
	•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사, 반복' 등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 확대
	• 통화 전수 녹음 허용,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조정, 개선 권고
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범정부 차원에서 기관별 지원
	•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차원 법적 대응 원칙화
	• 피해공무원 대상 핫라인 신설, 휴식과 치유 지원 강화 (6일 이내 공무원 병가 사용, 심리상담 등 제공)
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AI 등을 도입하여 민원업무 처리 지원
	• 경력자 민원부서 우선 배치, 퇴직공무원 활용
	•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재배치
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 승진과 관련된 가점 제공, 피해공무원 우선 전보
	•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발생 시 경위 참작
	•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 상호존중 민원 문화 인식 개선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2024.5.2. 재구성.

- 이번 범정부 대책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민원 현장에서 가장 핵심인 심리안정휴가제도 실시에 따른 부족한 현장대응 인력 충원 문제, 민원공무원을 치유할 공무원마음센터 확충 등의 대책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민원공무원의 성명 비공개조치로 인한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의 균형 문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 거부에 대한 비판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임¹⁶⁾

16) 강주리, 「악성민원 방지 대책, '원점 재검토'하라고요?」, 『서울신문』, 2024.6.1.

2 개선방안

- 정부에서는 민원공무원의 잇달은 사망사건으로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나, 민원공무원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해당 대책에서는 경력자 민원부서 우선 배치 및 퇴직공무원 활용,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실제 심리안정휴가제도 실시에 따른 부족한 현장대응 인력을 인력 재배치나 퇴직공무원 활용 등을 통해서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피해공무원을 대상으로 휴식과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6일 이내 공무원 병가 사용,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편, 민원공무원의 성명 비공개 조치로 인해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대립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민원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조종오

☎ : 02-6788-4564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 민원제도과

☎ : 044-205-2448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 044-201-8410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주로 서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24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 본점 1,284개를 운영 중임
 -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278억 원 규모이고 새마을금고의 총거래자는 2,355만 4,000명임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시행하고 있음¹⁷⁾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행정안전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 본점(지역금고·직장금고)을 정기적으로 검사 및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연도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현황 ■

연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현황
2020	•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금고 자본금 확충 방안,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 자격요건 도입 등) •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고(경영실태평가 3~5등급)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관리
2021	• 「새마을금고법」 개정(이사장 직선제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행정안전부가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20개소)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수익성 악화 금고 대상 컨설팅 추진(44개소)
2022	•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 개정(이사장 직선제 의무 도입, 이사장 자격요건 신설 등) • 행정안전부가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지역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30개소) 실시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방안」 수립 및 시행
2023	• 「새마을금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사장 자격요건 강화, 임원 결격사유 신설 등) • 행정안전부가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지역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30개소) 실시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금고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등) • 부실 금고 4개 정리(2024년 기준으로 금고 본점 1,284개)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2)』, 2024, p.1588 재구성.

17) 정기종합감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정부합동감사도 매년 시행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2)』, 2024, p.1584.).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대출 사고 등이 계속되고 있음
 -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2021년 1.93%, 2022년 3.59%, 2023년 5.07%로 증가하였고, 2024년 1분기는 7% 중반대로 추계됨¹⁸⁾
 - 금융당국이 매 분기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와 연체율을 발표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¹⁹⁾
 - 금융당국은 일관된 통계 작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대상 금융기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²⁰⁾
 -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보다는 기업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¹⁾
 -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잔액이 2024년 3월 기준으로 106조 6,6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2022년 1월(87조 6,378억 원)보다 19조 원(21.7%) 늘어났음
 -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59조 1,037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2022년 1월(66조 2,198억 원)보다 7조 원(10.7%) 줄어들었음
 - 새마을금고 임원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借主)를 앞세워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면서 문을 닫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된 사례가 있음²²⁾

2 개선방안

-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²³⁾,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각 금고 본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유준호, 「새마을금고 부실 대응 강화, 쇄신은 아직」, 『매일경제』, 2024.6.14.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2024.3.22.

20) 신민경,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3.55%로 급등, 증권업권 17%대」, 『한국경제』, 2024.6.5.

21) 신동근, 「기업대출만 늘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비중 3년 새 10% 뚫」, 『아주경제』, 2024.6.16.; 황예림, 「서민공급 늘린다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비중은뱅크런 때보다 후퇴」, 『머니투데이』, 2024.7.17.

22) 한상봉, 「새마을금고 임원도 킨 718억 불법 대출」, 『서울신문』, 2024.5.9.

2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임.

-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가 계속되었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문적 관리·감독·지도(2016년 국정감사)
 -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2019년 국정감사)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2020년 국정감사)
 - 지역금고 이사장의 연임 금지 강화(2021년 국정감사)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2022년 국정감사)
 -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조사(2022년 국정감사) 등임
- 행정안전부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공시시스템을 2025년 8월에 차질 없이 오픈할 필요가 있음²⁴⁾
- 새마을금고별 순이익, 고정이하여신 비율, 유동성 비율, 기타 주요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해,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및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협·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전반적)으로 감독하고, 금융위원회가 농협·수협의 금융 관련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에 대해 감독·명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 044-205-3955

24) 오유림, 「1,284개 새마을금고 경영정보 공개」, 『한국경제』, 2024.6.21.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문제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 자체수입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보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이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 보통교부세 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고자,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서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의 97%”로 명시하고 있음²⁵⁾
 - 만약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받게 되는 재정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들 때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에서,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에 내국세가 감소하자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즉시 감액한 문제가 발생함²⁶⁾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자금이 미배정된 것임²⁷⁾
 - 2023년 9월에 기획재정부가 국세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의 결손금액이 약 59조 원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내국세에 연동하는 보통교부세 자금 미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예산을 불용하였음
 - 이는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²⁸⁾,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5항²⁹⁾에 따른 기획재정부

25)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24, p.71.

26) 이상민, 「사실상 불용, 말장난이 감춘, 지방정부에 떠넘긴 불용」, 『나라살림』 제368호, 나라살림연구소, 2024, p.5.; 이상민, 「교부세 감액, 법과 사례가 있다는 정부 주장 사실 아냐」, 『나라살림』 제369호, 나라살림연구소, 2024, p.7.

27)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28)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의 조치였음

- 실제 수치를 확인하고자 2022년 보통교부세와 2023년 보통교부세를 비교함
 - 2022년 보통교부세 최종 교부액은 70조 4,142억 원으로, 2021년(51조 3,318억 원)보다 19조 824억 원 증가한 금액이었음
 - 2023년 보통교부세 최종 교부액은 59조 5,197억 원으로, 2022년보다 10조 8,945억 원 감소한 금액임
 - 2023년 보통교부세 자금 미배정액이 총 7조 1,689억 원 규모임
 -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2조 7,946억 원)와 군(2조 3,390억 원)의 자금 미배정액이 크게 나타남

■ 2022년 보통교부세와 2023년 보통교부세(최종 교부액 비교) ■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최종 교부액	22년 보통교부세 교부액				23년 보통교부세 교부액			
		예산		정산분	22년 최종 교부액	예산		정산분	23년 최종 교부액
		당초	추경분			당초	자금 미배정		
특별시	1,609	1,726	326	153	2,206	1,554	0	0	1,554
광역시	59,863	62,186	11,750	5,526	79,461	78,018	-8,435	52	68,635
세종시	783	837	158	74	1,069	1,257	-136	1	1,122
도	74,190	77,357	14,618	6,875	98,849	90,763	-9,631	59	81,191
제주도	15,400	16,531	3,124	1,469	21,124	20,003	-2,151	13	17,865
시	195,033	210,096	39,698	18,670	268,464	258,615	-27,946	172	230,841
군	166,442	182,309	34,455	16,204	232,968	216,236	-23,390	144	192,990
합계	513,318	551,042	104,129	48,972	704,124	666,446	-71,689	440	595,197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23, p.9.; 『2023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24, p.9.

-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2023년에 임의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불용(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자금을 미배정)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현재 진행 중임³⁰⁾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9) 「국고금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30) 참여연대,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 내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감액하려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임³¹⁾
 -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액을 그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³²⁾

2 개선방안

- 내국세가 감소하면 보통교부세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국세가 감소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고,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여 교부하도록 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내국세가 감소해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환경을 만들고, 보통교부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보통교부세 감액에 있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재량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 : 044-205-375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32) 박용필, 「교부세 널뛰기는 위법, 어느 지자체가 맘 놓고 사업하겠나」, 『경향신문』, 2024.4.19.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잦은 고장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2월 13일에 개통한 정보시스템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지방세 시스템(위택스)”과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임³³⁾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국민(납세자)과 지방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약 10만 명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해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1,923억 원이고, 시스템 개발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임³⁴⁾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1,608억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315억 원)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겪었음
 - 2024년 2월 13일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약 한 달간 접속 오류, 시스템 과부하, 서비스 지연(遲延), 지방세 납부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³⁵⁾
 - 실시간 수납 미반영, 환급 관련 전자 이체시스템 불안정, 취득세 산출세액 임의 변경 현상, 주소 변동 내용 조회 어려움, 취득세 부과 내용 조회 지연 현상, 기존의 시스템이 갖추었던 편의 기능 삭제 등이 발생함

33) 참고로 2024년 1월 19일에 개통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편한 것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임. 지방공무원이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업무를 할 때 활용하는 업무망으로(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 2024.1.2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별개의 정보시스템임.

3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시스템 본격 추진」, 2020.2.11.

35) 양정우, 「한 달째 말썽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비상 대응·보수 병행해야」, 『연합뉴스』, 2024.3.31.

-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납세 관련 민원이 폭증하였으며,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됨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총괄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미숙한 대응도 지적됨
- 2024년 5월 7일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가 5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음³⁶⁾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가 끝난 이후에 납세자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³⁷⁾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에 접속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연계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서 지연(遲延)이 있었고,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계 부분에 데이터가 누적되어 시스템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³⁸⁾
- 2024년 7월 1일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의 시스템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음³⁹⁾
 - 7월 1일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마감일이고 납부 기한인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에 납세자가 집중되면서 시스템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됨
- 향후, 2024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1/2),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1/2) 등 대규모 지방세 납부가 예정되어 있음

36) 박기웅,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오류 반복, 행안부, 내주부터 차질 없도록」, 『뉴시스』, 2024.5.9.

37) 이상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 석 달간 줄 장애, 현장은 부글부글」, 『연합뉴스』, 2024.5.8.

38) 행정안전부 보도 설명자료,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의 즉각적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5.9.

39) 이상서, 「세금 받기 싫나, 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 『연합뉴스』, 2024.7.2.

2 개선방안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스템의 잦은 고장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정기분 과세가 모두 마무리되는 2024년 9월 중순부터 2025년 2월까지 시스템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므로,⁴⁰⁾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유지·보수·개편해야 할 것임
 - 2024년 국정감사 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개편 계획을 공개해야 할 것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했던 지방세 시스템과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으로, 시스템이 복잡하고,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임
- 2015년에 개통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을 참고해, 적절한 예산 배정과 정보시스템 개편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개발된 시스템으로, 1단계(2009~2011년) 3천억 원, 2단계(2011~2014년) 5천억 원, 3단계(2015년) 2천억 원 등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추진단

☎ : 02-2100-4200

40) 윤승민, 「오류·지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르면 9월부터 개선 돌입」, 『경향신문』, 2024.6.2.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1949년), 국가 등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1962년) 등으로, 오래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지방세 비과세는 일단 비과세가 되면 무기한 비과세가 되므로, 비과세의 폐지 또는 연장 등을 점검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비해, 지방세 감면은 일몰 기한이 있으므로 감면의 폐지 또는 연장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 다음 표처럼, 지방세 비과세액과 감면액 중에서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방세 비과세액	77,177	79,635	86,363	90,402	93,751
지방세 감면액	59,035	59,435	62,888	66,995	73,760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합계	136,212	139,070	149,251	157,397	167,511
지방세 합계	843,183	904,604	1,020,488	1,127,984	1,185,707

주: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이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한 감면의 합계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지방세 비과세 중에서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9.7%에 달함(2022년 결산액 기준)
 - 위의 표에서 2022년 비과세액이 총 9조 3,751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비과세의 합계액이 아래 표처럼 6조 5,377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비과세 합계액 ■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취득세 비과세	55,800	4,986	55,000	5,614	59,200	7,055	55,300	7,514	52,000	6,160
재산세 비과세	667,700	42,534	686,600	46,508	734,000	49,311	781,400	54,312	768,600	59,217
합계	723,500	47,520	741,600	52,122	793,200	56,366	836,700	61,826	820,600	65,377

주: 「지방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근거한 취득세 비과세와 동법 제109조제1항·제2항에 근거한 재산세 비과세임.

자료: 행정안전부, 「취득세 및 재산세 비과세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사유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비과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징수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롯되었고,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⁴¹⁾
- 주한 국제기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비과세는 우리나라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과세해 주는 것임

2 개선방안

-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가 예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가 등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감안해 비과세를 축소할 것인지, 비과세를 폐지하고 모두 감면으로 변경할 것인지, 비과세 중 일부를 감면으로 변경할 것인지, 감면으로 변경한다면 감면의 일몰 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세무 행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비과세를 최소화하고 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⁴²⁾

41) 마정화, 『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면제 제도와 비교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pp.11~14.

42) 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지역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22, pp.104~105.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 자신(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재산만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득세·재산세를 과세한 후, 필요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취득세·재산세를 비과세해야만 우리나라가 주한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 044-205-3842

세외수입 징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법률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신설과 세율 결정 등이 가능한 조세법률주의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⁴³⁾을 확대하기 위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따라 조례 등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입원임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 및 별표 8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됨
 -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 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등 종류가 많고 성격이 각기 다름⁴⁴⁾
-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1.9%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어 그 비중이 작지 않으며, 세외수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가 필요함
 -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액 151조 7,952억 원 중에서 21.9%에 해당하는 33조 2,245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8년 28조 4,580억 원에서 2022년 33조 2,245억 원으로 5년간 16.7%가 증가함
-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⁴⁵⁾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84.0%에서 2022년 84.4% 수준임

4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임.

44)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2022, p.3.

45)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율 96.5%, 세외수입 징수율 84.4%임.

■ 지방세외수입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규모 및 비중	자체수입 합계	1,127,763	1,198,483	1,320,457	1,466,952	1,517,952
	(자체수입 합계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외수입	284,580	293,879	299,969	338,968	332,245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5.2	24.5	22.7	23.1	21.9
	지방세	843,183	904,604	1,020,488	1,127,984	1,185,707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4.8	75.5	77.3	76.9	78.1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율	84.0	84.3	83.6	85.8	84.4
	지방세 징수율	94.9	95.4	96.1	96.6	96.5

자료: 행정안전부, 『2023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2023, pp.20-21.

2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지방세 징수율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10%p 가량 낮고, 세외수입의 종류가 많으며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 분석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임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변화하는 세외수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여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세외수입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체류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외수입의 징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분석해 사용 빈도가 높은 몇 개 언어로 된 체납액 납부 안내문 또는 체납 문자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 044-205-3877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상향

1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임⁴⁶⁾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접 대응하는 목적을 가진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초라는 의의가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기초지원계정(기금액의 75%)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기금액의 25%)을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와 세종시 제외)에 배분함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대한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빠짐없이 배분되었음
 - 2022년과 2023년의 2년간 합계 배분 금액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210억 원(A등급)부터 112억 원(E등급) 수준이고, 관심지역은 53억 원(A등급)부터 28억 원(E등급) 수준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지자체 수(비율)	배분 금액(억 원)			지자체 수(비율)	배분 금액(억 원)		
		2022년분	2023년분	2년분 합계		2022년분	2023년분	2년분 합계
A	4 (5%)	90	120	210	1 (5%)	23	30	53
B	13 (15%)	72	96	168	3 (15%)	18	24	42
C	39 (45%)	60	80	140	9 (45%)	15	20	35
D	18 (20%)	54	72	126	3 (20%)	14	18	32
E	15 (15%)	48	64	112	2 (15%)	12	16	28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2022.8.16.

46)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07호, 2022, p.1.

-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루어져, 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집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 추진 일정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이 2022년 2월에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2022년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였고,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투자계획을 평가하였으며, 2022년 8월에 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조합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후, 2022년 9월에 기금이 배분되었음⁴⁷⁾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⁴⁸⁾
 -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59.8%에 불과하고,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43.1%에 불과함
 -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이 광역지원계정보다 더 낮은데,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47.2%에 불과하고, 2023년분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6.1%에 불과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현황 ■

구 분	2022년분 기금 집행률			2023년분 기금 집행률		
	23년 12월	24년 3월	24년 12월(예상)	23년 12월	24년 3월	24년 12월(예상)
기초지원계정	37.6%	47.2%	92.6%	19.4%	26.1%	71.8%
광역지원계정	97.7%	97.7%	-	93.0%	94.0%	-
합계	52.6%	59.8%	94.4%	37.8%	43.1%	77.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3개(1개 구, 2개 군) 있음⁴⁹⁾
 - 또한, 2023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7개(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 중에서 6개(3개 시, 3개 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개(1개 광역시) 있음

47)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2023, p.40.

48) 송윤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배분 현황」, 『나라살림』 제353호, 나라살림연구소, 2023, p.11.

49)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 ■

구 분	2022년분 기금			2023년분 기금		
인구감소지역(89개)	-	1개 구	2개 군	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18개)	-	-	-	3개 시	3개 구	-
광역자치단체(15개)	-	-	-	1개 광역시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재구성.

2 개선방안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상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현재의 배분 방식은,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⁵⁰⁾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균등 배분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수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음⁵¹⁾
 -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⁵²⁾
 - 기금의 집행률에 따라 기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장기간 집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을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관리에만 집중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위탁 사업 실시 기관으로 이전해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기금의 집행률만 높일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즉, 단기적으로 집행률 상향을 강조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임

50) 손희준,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국회입법조사처보』 제5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p.40.

51) 박병기, 「영동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선돼야」, 『연합뉴스』, 2024.3.19.

52) 강경국,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 『지방공공기관』 제40호,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p.22.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 044-205-352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성화 노력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부터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하였음⁵³⁾
 - 기존의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것만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민간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음⁵⁴⁾
 - 즉,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역량과 풍부한 자본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가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자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투자되도록, 수익성 금융상품인 펀드를 활용하는 것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母)펀드가 자(子)펀드로 출자하고, 자펀드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출자하는 이중 구조를 가짐
 - 모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정부 재정 1,000억 원, 민간투자(산업은행)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됨
 - 출자금 3,000억 원 기준으로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임
- 2024년 5월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투자하는 사업이 2건 선정되었음⁵⁵⁾
 - 첫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 프로젝트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투자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임
 - 총사업비 1,133억 원으로, 단양역 폐철도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호텔·어드벤처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임
 - 단양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해 단양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53)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2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p.1.

5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가 연간 1조 원이고 배분받는 지역이 122개이므로, 시·군·구당 70억 원 내외의 단기·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될 우려가 있음(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55)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둘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프로젝트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투자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임
 - 총사업비 1,239억 원으로, 노후화된 구미 1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기숙사 총 506호실을 건립하는 사업임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 총 2조 원의 신규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도입 초기인 만큼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종료되는 2031년 이후의 모펀드 출자 방안이 불확실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이 배제될 수 있고, 민간 부문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⁵⁶⁾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하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펀드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⁵⁷⁾
 - 펀드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수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균형 있게 책임을 배분해,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임⁵⁸⁾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적인 출자와 2031년 이후의 출자 계획을 마련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 및 펀드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56) 이충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발전 견인할까」, 『남해신문』, 2023.8.18.

57) 매일신문 사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민간 자본 참여 유인책 있어야」, 『매일신문』, 2023.7.13.

58) 이유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착, 민간 참여 이끌 사업이 핵심」, 『농민신문』, 2023.10.30.

-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교육·설명회·간담회·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와 운영 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배포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⁵⁹⁾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고, 민간 부문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⁶⁰⁾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 044-205-3412

59) 강경국,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 『지방공공기관』 제40호,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p.23.

60) 이광식,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기준 공개해야, 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경제』, 2024.2.29.

고향사랑기부 확산

1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임
 - 개인이 고향사랑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 혜택을 줌
 -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이면 10만 원을 모두(100%) 세액공제하고,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세액공제해 줌
 -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함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은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간 500만 원이고,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임
- 고향사랑기부금의 2023년 모금액은 약 650억 원인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206억 5,069만 원임
 - 이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172억 2,430만 원으로, 2023년 동기(同期) 대비 약 16.6%(34억 2,639만 원) 감소하였음⁶¹⁾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4년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2023년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향사랑기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거주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개인이 거주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기부금을 과하게 모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유착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이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또한, 법인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61) 김지훈, 「고향사랑기부제 전년 대비 16% 감소, 기부액 5월까지 172억 2,430만 원」, 『창업일보』, 2024.6.24.

-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2008년에 개인의 기부를 시작으로 2016년에야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였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도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작하면서 개인의 기부만 가능하게 하였음

2 개선방안

- 고향사랑기부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인이 거주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은 거주지의 정책에 관심이 높고 거주지의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이 거주지에 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확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개인에게 거주지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과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유착 관계가 생기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처럼, 개인이 거주지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고향사랑기부를 확산하기 위하여, 법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에서 법인이 고향납세 기부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창생(蒼生) 또는 지역 재생 사업에 기부하는데, 이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이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에 기부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법인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재정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함
 - 일본은 기부한 법인이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 044-205-3507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2월 17일에 출범한 위원회로, 지방재정의 부담 수준을 심의·조정하고, 지방재정 위기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을 가짐⁶²⁾
 -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함
 -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⁶³⁾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
 - 2024년 2월 20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②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절차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 2024년 지방세지출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원안 통과하였음
- 현행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존보다 위원장의 급이 격하(格下)되었음
 -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였음
 -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예: 국고보조율 논의)을 다루는 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였음
 - 2012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음
 - 2013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음
 - 2015년에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함
-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환류가 부족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었으며 지방재정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⁶⁴⁾

6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63) 매년 1~2월 중 1회 개최하고, 7~8월 중 1회 개최함.

64) 한재명,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부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p.100.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부담 요인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것임
- 이와 비교할 때, 현행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중립적·효율적인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최근 5년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매년 1회의 서면회의와 1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안건이 동일하였음⁶⁵⁾
 - 매년 서면회의 안건은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었고, 대면회의 안건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수준 적정성 논의”였음
 - 세부 내용을 보면, 2022년 8월에 개최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각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8건을 의결했지만, 이 가운데 이행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건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⁶⁶⁾
 - 위원장인 국무총리,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에 강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지적임
 - 또한, 2023년 8월에 개최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각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10건을 의결했지만, 10건 모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⁶⁷⁾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각 부처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6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66) 김원진, 「국감 2022: 지방재정 부담 줄이는 위원회 직책 물으니」, 『경향신문』, 2022.10.24.

67) 김윤나영, 「정부, 청년·장애인 예산 국고보조 상향 의무 미이행」, 『경향신문』, 2023.9.29.

2 개선방안

- 2024년 2월 17일에 출범한 현행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국무총리로 격상(格上) 하여, 지방재정이 관련된 각종 사항을 중립적·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국무총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부처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위원회의 논의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국무총리는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큰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영향력을 높여야 할 것임
 -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여러 부처 장관보다 상위의 위치에 있으므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지방재정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사회경제적 환경,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방재정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⁶⁸⁾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임

68)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 044-205-3769

공유재산 특례 제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세외수입)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 일반적이지 않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됨
 - 하지만,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 법률로 임대료의 감면 등의 공유재산 특례를 신설해 왔음
- 다음 표와 같이,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례 건수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 170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283건의 공유재산 특례가 운영 중임
 - 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철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임⁶⁹⁾

■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례 건수(누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6건	246건	260건	265건	283건

자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특례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개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건수 및 감면액 규모가 상당함
 - 2019년 16,000건(1,622억 원) 규모에서 2023년 52,000건(2,881억 원) 규모로 증가함

69)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최종 검색일: 2024.7.1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4&ccfNo=7&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공유재산법과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건수 및 감면액

(단위: 건, 억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000	1,622	77,000	2,928	91,000	3,174	89,000	3,427	52,000	2,881

주 1: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건수 및 감면액임.

주 2: 개별 법률에서 10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어촌·어항법」,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하천법」, 「항만법」)을 제외함. 이 10개 법률은 별도로 임대료(점용료, 사용료 등)를 정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특례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인데,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다르게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개별 법률에서 특정 목적⁷⁰⁾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讓與),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음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유재산 특례를 신설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일관된 원칙 없이 공유재산 특례를 방만하게 신설할 우려가 있음
 - 다양한 개별 법률의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적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개별 법률의 특례가 일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충돌하면 법적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공유재산 특례 규정이 남용되면 공공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개선방안

- 공유재산 특례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공유재산 특례 관리가 필요함⁷¹⁾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음대로 신설·변경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특례 신설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70) 예: 특정 지역 개발, 특정 사업 지원, 재해 복구 등.

71) 정창기,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 특례관리 강화 방안」, 『지방재정』 제6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 pp.42-43.

- 공유재산 특례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제한하고,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⁷²⁾
 - 공유재산 특례에 대한 정의,⁷³⁾ 공유재산 특례의 기본 원칙,⁷⁴⁾ 공유재산 특례 신설·변경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공유재산 특례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특례의 효과성 평가 등을 정해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대장, 세외수입 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연계된 (가칭)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특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 공적 장부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공유재산 특례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조하며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임⁷⁵⁾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류영아

☎ : 02-6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 044-205-3789

7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1.10.27.

73) 예: 임대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讓與),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등.

74) 예: 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특례가 예산지원·현물출자·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등.

7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2024.4.15.

마을기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마을기업 현황⁷⁶⁾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함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일 것
- 지원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각 연도별 자부담 20% 이상)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1천만원(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 지원)
- 마을기업 운영현황: 2023년말 기준 전국에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음

■ 지역별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800	95	72	101	58	72	63	51	3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8	142	94	162	120	209	148	127	43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2024.6.10.).

7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을기업」, 2024(최종 검색일: 2024.7.21.), <<https://www.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Ⅱ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일반식품	전통식품	관광체험	공예품	교육	문화예술
1,800	808	208	246	94	91	83
재활용	유통기업	의류신발	물류배송	사회복지	에너지	기타
30	27	14	5	17	2	175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2024.6.10.).

■ 마을기업과 관련된 쟁점

○ 법령상 근거 미비

- 현재 마을기업 사업의 근거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임⁷⁷⁾
- 이에 마을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창업·운영예산 지원 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⁷⁸⁾

○ 마을기업 정책의 목표 혼선

- 행정안전부는 2021. 5. 13.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음⁷⁹⁾
- 그러나, 2024년 예산(26억 9,500만원)은 2023년 예산(69억 6,500만원)에 비해 4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지원과 신규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예비)마을기업 51곳의 96개 민간보조위탁사업 정부 보조금 33억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3년간 기업 3곳에서 집행한 2억 1,0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8,900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마을기업 29곳에서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⁸⁰⁾

77) 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4)』, 2024, p. 4048.

78) 정동만국회의원실·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2023 대한민국 마을기업 국회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 2024.

7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 3,500개로 확대」, 2021.5. 2.

80) 이승륜, 「무허가 건물 공사 보조금 타고, 배우자 강사 초빙해 허위 강의비 지급... 보조금 부정 부산 마을기업 적발」, 『문화일보』, 2023.11.13.(최종 검색일: 2024.7.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4682?sid=102>>.

2 개선방안

■ 마을기업 정책의 목표 정립 필요

- 마을기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양적 성장보다는 홍보·판로확대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보도도 있는 상황⁸¹⁾인데, 목표를 『마을기업 육성지침』 등에 명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을기업의 근거법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

- 이와 관련하여, 22대 국회에는 2건(박정의원 대표발의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을 검토하여, 예산의 적법한 집행을 강조하고 마을기업 사업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마을기업이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용·정산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임준배

☎ : 02-6788-4567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 : 044-205-3434

81) 유호경, 「우수 마을기업 “다각화도 좋지만 보조금이 더 절실” 왜?」, 『이코리야』, 2024. 5. 8.(최종 검색일: 2024. 7. 22.),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43>>.

특례시 특례 적극 발굴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특례시 현황

-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뜻함
 - 특례시의 인구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①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③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임
 - 한편,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분기 말일 현재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됨
- 현재 특례시는 4개 기초자치단체로,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가 있음

■ 특례시 주민등록인구 (2024. 6. 기준)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1,196,959명	1,082,468명	1,072,125명	1,003,731명

※ 특례시 인구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4(최종 검색일: 2024. 7. 21.), <<https://kosis.kr/>>.

■ 특례시에 현재 부여되어 있는 권한

- 특례시에 현재 부여되어 있는 주된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6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
 - ①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위탁에 관한 사무, ③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④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⑤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개 기능 15개 단위사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

- 「관광진흥법」: 1개 기능 5개 단위사무
 -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개 기능 1개 단위사무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집적지역이 특례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특례시에 현재 부여되어 있는 특례

- 조직·재정 특례
 -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고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시(市)세로 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지급에 가산점이 부여
- 그 외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 주거급여 급지 상향 등의 효과가 기대됨

■ 현행 특례시 제도의 쟁점

- 특례시의 권한·특례 확대 요구
 - 현재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과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양 사무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나 이 중 자치분권위원회⁸²⁾에서 의결된 특례사무는 25개에 불과하였음
 - 현재 4개 특례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 등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에 이전 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황임(2023. 10.)
- 특례시 기준 인구수에 대한 쟁점
 - 현재 특례시의 인구 기준인 100만명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창원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하더라도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2029년에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⁸³⁾

82) 現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임.

83) 김정훈, 「[단독] 창원특례시 연내 인구 100만 붕괴 예고에 정부, 특례시 기준 완화 검토」, 『경향신문』, 2024.6.13.(최종 검색일: 2024.7.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2025?sid=102>>.

- 또한, 화성시(인구 953,615명)·성남시(인구 917,192명)의 경우 인구 100만에 근접한 바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특례시”로 지정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음⁸⁴⁾

2 개선방안

■ 특례시 권한 이양과 관련된 논의 필요

- 특례시에 추가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각 법률에 편재되어 있는 특례시 관련 특례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⁸⁵⁾

■ 특례시의 인구 기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함

- 인구 감소 추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임준배

☎ : 02-6788-4567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 044-205-3485

8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1624,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안).

8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2024.7.17.

주민e직접 플랫폼 홍보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주민e직접 플랫폼 개요

- ‘주민e직접’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2022.2.8.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음⁸⁶⁾
- 주민e직접 플랫폼이 개시된 2022년부터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권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음
- 2023년 7월에는 주민감사청구 기능을 추가하였고⁸⁷⁾ 2024.2.28.부터는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 기능을 추가하였음⁸⁸⁾
 - 주민생각 기능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됨
 -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주민생각 서비스가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주민e직접 플랫폼 사용실태⁸⁹⁾

- 주민조례청구 서비스에는 2022.2.8.부터 기준일(2024.7.21.)까지 총 103건이 등록되었음
 - 등록된 103건 중 1,000회 이상의 전자서명을 받은 조례안이 12건이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필요서명수 3,380건을 초과하는 3,726건의 전자서명을 받아 조기에 서명을 마감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8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2.2.8.

87) 계승현, “주민감사청구, 이제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연합뉴스, 2023.7.2.(최종 검색일: 2024.7.18.), <<https://www.yna.co.kr/view/AKR20230630175100530>>.

8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2024.2.27.

89) 참고로 주민투표청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주민에 의한 청구 사례가 없어, 주민e직접에도 등록된 사례가 없음.

- 다만, 한 자릿수의 전자서명을 받은 조례안도 40건에 달하는 등, 전자서명을 통한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 청구의 활성화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건수 ■

총 청구 수	2,000건 이상	1,000건 이상 2,000건 미만	500건 이상 1,000건 미만	200건 이상 500건 미만	100건 이상 200건 미만	100건 미만
103	6	6	8	15	7	6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2024를 참조하여 저자가 직접 정리함.

- 주민감사청구 서비스의 경우 2023.7.부터 2024.7.18. 현재까지 총 18건 등록되었음
 - 18건 중 10건의 청구가 전자서명만으로 필요서명 수를 초과하여 시스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주민생각 서비스의 경우 현재까지 실질적인 이용 실적이 없다시피 한 상황임
 - 주민선택 서비스의 경우 주민선택 사용자를 위한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실질적인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설문은 공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주민e직접 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설문조사 17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2 개선방안

■ 주민e직접, 주민생각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

- 주민e직접 플랫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주민e직접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주민설문 중, 가장 응답수가 많은 서울시의 설문조사 자유응답 80건⁹⁰⁾ 가운데 35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또한,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⁹¹⁾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임준배

☎ : 02-6788-4567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 044-205-3384

90) 자유응답 101건 중에서 잘 모르겠음, 없음, 공란 등 21건은 제외한 것임.

91) 강인희, 「참여방법 어렵고 홍보 부족 주민조례발안제 '유명무실」, 『기호일보』, 2024. 5. 28.(최종 검색일: 2024. 7. 21.),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53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관련 제도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개요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이 소재·연접한 읍·면·동 또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연접한 읍·면·동 지역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함
- 근거 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7조·제34조
- 수립 절차: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
- 지원 대상: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
- 지원 기간: 2008년 ~ 2026년
-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 ③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 ④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 ⑥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⑦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⑧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 ⑨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⑩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⑪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⑫ 그 밖에 「미군공여구역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발전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 1988년부터 주한미군 이전이 검토되며 2004년에 평택이전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미군공여구역법」이 2006년 3월 제정되었음

- 2008년 1월에 2017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최초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업 여건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2017년 제13차 변경, 2021년 제18차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음
- 가장 최근의 변경인 제20차 변경(2023.8.)은 사드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규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임

■ 발전종합계획의 규모

- 가장 최근의 변경인 제20차 변경(2023.8.)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559건이며, 이는 토지매입비 지원 33개 사업과 반환공여지주변 지원사업 등 526개로 이루어져 있음
- 예산 48조 7,848억 중 국비가 4조 7,269억원(9.7%), 지방비가 6조 5,417억원(13.4%), 민자 투자가 37조 5,162억원(76.9%)임

■ 발전종합계획 시행상의 문제점

- 발전종합계획의 예산규모는 총 48조 7,84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의 투자실적은 31.9%인 15조 5,852억원에 불과함
- 특히, 민자 등을 통한 투자는 계획된 37조 5,162억의 20.1%인 7조 5,442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발전종합계획 투자실적(2023년까지) ■

(단위: 억원)

구 분	총 액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계획 규모	487,949	47,268	65,417	375,162
투자실적	155,853	37,360	43,071	75,422
비 율(%)	31.9	79.0	65.8	20.1

자료: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

2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매입 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① 이는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에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고, 보조하는 경비 지원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으로 지정하고 있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율의 하한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도로·하천·공원에서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까지 확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⁹²⁾

■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민자 등을 통한 투자는 계획 규모의 76.9%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 금액은 계획된 37조 5,162억의 20.1%인 7조 5,442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미합중국으로부터의 반환 일정,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기간과 치유비용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⁹³⁾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임준배

☎ : 02-6788-4567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 : 044-205-3513

92) 권철승·김성원·김병욱·박정·송기현·유승희·윤후덕·이현재·정성호·조웅천·홍영표의원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자료집」, 2019, p.89.

93) 권철승·김성원·김병욱·박정·송기현·유승희·윤후덕·이현재·정성호·조웅천·홍영표의원실, 앞의 글, 2019, p.94.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

1 현황 및 문제점

-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라 할 수 있음
 - 재난발생 시 중수본은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한 사고대응 및 수습에 매진하고, 중대본은 범정부 기관으로써 중수본이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총괄 조정 및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2014.12.30.)하여 대형 재난의 경우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중대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도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 그런데 이로 인해 오히려 우리나라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2개(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가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6월~8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하였음
 - 하지만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중인 상태였음
 - 이는 20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이태원 참사 등의 시기도 마찬가지였음
- 최근 5년('18~'22년) 동안 중대본이 2개 이상 동시에 구성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 3년 이상 운영하였던 코로나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시기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풍수해 관련 중대본(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이 함께 운영된 부분이 대부분이었음

- 하지만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시기(본부장: 외교부장관, 운영기간: 2019.5.30.~2019.7.30.)에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중대본(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운영기간: 2019.6.26.~2019.6.27., 2019.7.25.~2019.7.28. 등 총 5회, 13일간)가 동시에 운영됨
- 행정안전부 소관인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발생시 중대본부장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지만 재난유형별로 각각 중대본을 구성(2019.8.3.~2019.8.6.: 폭염, 2019.8.5.~2019.8.7.: 태풍)하여 운영하였음

■ 최근 5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시에 2개 이상 구성된 사례 ■

운영기간	재난명 (재난유형)	중대본부장	운영기간	재난명 (재난유형)	중대본부장	비고
'19.8.3.~ '19.8.6.	폭염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장관	'19.8.5.~ '19.8.7.	태풍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장관이 동시에 2개의 중대본 운영
'19.5.30.~ '19.7.30.	헝가리 유람선 사고 (해외재난)	외교부장관	'19.6.26.~ '19.6.27.	호우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장관	서로 다른 장관급 중대본 2개 운영
			'19.6.29.~ '19.6.29.	호우 (자연재난)		
			'19.7.10.~ '19.7.11.	태풍 다나스 (자연재난)		
			'19.7.18.~ '19.7.21.	호우 (자연재난)		
			'19.7.25.~ '19.7.28.	태풍 프란치스코 (자연재난)		
'20.2.23.~ '23.5.31.	코로나19 (사회재난)	국무총리	'22.10.30.~ '22.12.2.	이태원 사고 (사회재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동시에 중대본 운영 (사회재난-사회재난)
'20.2.23.~ '23.5.31.	코로나19 (사회재난)	국무총리	'20.6.12.~ '20.6.14. 포함 총 52회 이상	호우, 태풍,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동시에 중대본 운영 (사회재난-자연재난)

- 위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점에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2개가 된 것임
- 이와 같이 복합재난(예,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번 경우와 같이 감염병재난과 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중대본이 구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감염병재난, 자연재난, 해외재난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3개의 중대본이 구성될 수도 있음. 산술적으로는 최대 5개의 중대본과 4명의 중대본부장이 동시에 구성·운영될 수 있음(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같은 해외재난, 원자력 사고,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 이는 복수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으로 복합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이 아니라 재난유형별로 개별적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서 미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2 개선방안

-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일원화 혹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대형재난 발생시마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장관만이 아니라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하지만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중대본이 2개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일선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중대본-중수본과 관련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후속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본의 역할 및 과거 사례(테르스 사태, 세월호 사태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의 경우, 관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게 된다면 수습본부는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담당하게 되므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9년 5월에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헝가리 사고에 대응하였으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

하여 실종자 수색활동을 진행하였음

- 위의 경우에도 외교부장관 혼자서 해외재난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은 수습본부장을 맡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아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파견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을 견인하고 사고수습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특히 방사능재난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수습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임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국내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방사능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히 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고대응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정부부처의 역량을 동원하여 사고대응을 지원하고 경제, 사회, 교육 등 재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재난(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이 주관하는 재난의 수습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되면,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간의 중앙대책본부장 지휘교대의 모호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자체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과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는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재난대응에 앞장서고 있음
- 내각총리대신은 비상재해 발생 시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내각부에 비상재해대책본부

를 설치하고(「재해대책기본법」 제24조), 국가의 경제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는 재해긴급사태를 포고하고 내각부에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함(같은 법 제38조)⁹⁴⁾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 : 02-6788-4563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 044-205-5116

94) 국회도서관, 「재난관리체계 II」, 『FACT BOOK』, 2014, p.80.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재난문자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동시에 긴급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성이 더욱 높으나, 하지만 운영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제점은 그만큼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음
- 재난문자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음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해진 자연재난과 미세먼지, 코로나 19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오던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다양한 재난 관련 기관들로 확대하면서, 빈번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이 증가하였다.
- 이에 정부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단말기 알람 소리도 조정하고, 문자 수신거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포항지진 이후 신속한 문자발송을 위하여 지진재난에 대한 재난문자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음
- 하지만 2023년 5월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위급재난문자의 경우, 오발령 관련 논란도 있었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발생시켰음
 - 이에 비해 일본의 대피 재난문자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1분 정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피 이유와 대피장소를 간결하게 표기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관련성이 높은 다수의 정부·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살펴보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등) 등이 지정되어 있음
-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국방부의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⁹⁵⁾
 -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경우 국방부가 가장 먼저 탐지하지만 재난문자는 국방부가 즉시 발송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에 탐지내용을 통보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확인한 후 국민들에게 발송하게 됨
- 그리고 위와 같이 많은 기관들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사시 이들 기관이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히 송출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함

2 개선방안

-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 재난문자방송 발송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재난문자방송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 따라서 민방공 재난문자의 경우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 궤도 등 이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가 직접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95)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 국방부가 빠져 있는 이유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8조(사용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해제되고 있는데, 국방부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에서 사용기관 지정 신청 시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음(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3.6.28.).

- 둘째,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된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한 국방부에서 즉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계·공급 경보를 발령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 따른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임
- 셋째, 재난문자 발송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300여 개가 넘는 재난문자 사용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 : 02-6788-4563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 : 044-205-5309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도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진피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 불가능하므로 지진발생 초기단계에 피해추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피해결과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함
 - 예측피해결과를 근거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구조, 구급 및 초기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임
- 2005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을 해오고 있으나, 피해추정 시뮬레이션 결과치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재난관리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진 피해추정은 건축물의 구조체 손상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지진에 의한 비구조체 손상 피해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여진에 의한 추가 손상은 구현이 불가함
- 지난 경주 및 포항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건축물 및 인명피해추정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건축물의 형태, 수 등)가 정확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지진재해 대응 업무 흐름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가동되면 지진정보 분석, 전도분포도계산, 건축물, 인명 라이프라인 피해계산 등 전 과정이 5분 이내 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진행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주·포항·부안지진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제 피해현황 ■

구분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피해 현황
경주지진 (2016. 9.12.)	전진 (규모 5.1)	- 전국 피해추정 현황 • 인명: 사망자(0), 부상자(0), 이재민(0) • 건축물: 전파 붕괴(0), 전파 비붕괴(0), 반파(0), 부분손실(0)	- 인명피해: 부상자 23명 - 시설피해 신고현황: 9,328건 • 사유시설: 8,875건 • 공공시설: 453건
	본진 (규모 5.8)	- 전국 피해추정 현황 • 인명: 사망자(0), 부상자(0), 이재민(0) • 건축물: 전파 붕괴(0), 전파 비붕괴(0), 반파(0), 부분손실(212)	
포항지진 (2017. 11.15.)	기상청 수정 발표 발생깊이 7Km 진도(M5.4, 7km)	- 전국 피해추정 현황 • 인명: 사망자(0), 부상자(26), 이재민(56) • 건축물: 전파 붕괴(0), 전파 비붕괴(3), 반파(22), 부분손실(2,760)	- 인명피해: 부상 15명 • 이재민 현황: 785세대 1,945명 (2017 재해연보 기준) - 시설피해 • 사유시설: 56,622개동 • 주택 전파: 671개동 - 반파: 285개동 - 소파: 54,335개동 • 기타: 1,441개동 • 공공시설: 417개동
	기상청 수정 발표 발생깊이 3Km 진도(M5.4, 3km)	- 전국 피해추정 현황 • 인명: 사망자(1), 부상자(56), 이재민(101) • 건축물: 전파 붕괴(3), 전파 비붕괴(15), 반파(65), 부분손실(4,298)	
부안 지진 (2024.6.12.)		- 전국 피해추정 현황 • 인명: 사망자(0), 부상자(5), 이재민(14) • 건축물: 전파 붕괴(1), 반파(9), 부분손실(988)	- 인명피해: 없음 - 시설피해: 대부분 부분손실(소파) • 경미한 피해(기와·벽돌 탈락, 유리창 파손 등)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2017 포항지진백서』, 2018, p.144.;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화신자료’, 2019.;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화신자료’, 2024.7.9.

주1: 포항지진의 경우, 기상청에서는 처음에는 발생깊이가 9km라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7km, 또 다시 3km라고 수정하였으며, 현재 포항지진의 발생깊이는 3km~7km사이라고 보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 업데이트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지속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비용대비 결과활용도를 고려하여 시스템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진파 및 여진 예측모델, 지진취약도함수, 빅데이터를 통한 지진지해 추전 기술 고도화 및 개발 등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임⁹⁶⁾
- 지진재해 대응 및 관리에 있어 행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빅보드를 고도화하고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실제 지진이 발생한 후 실시간 피해상황파악 및 대응(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 : 02-6788-4563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 044-205-5197

96) 이기학 외 5인, 「지진피해추정시스템 현황과 한국형 고도화 연구사업」, 『재난 안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1년 여름호, pp.62~63.

인사혁신처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는 현상⁹⁷⁾과 함께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일반퇴직 현황을 살펴 보면, 저연차공무원⁹⁸⁾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10년
2019	7,817	1,734	2,274	2,492	684	633
2020	10,941	1,583	4,209	3,217	1,038	894
2021	12,482	2,686	4,617	3,123	1,161	895
2022	15,859	3,064	5,277	4,691	1,590	1,237
2023	17,179	3,020	5,629	4,917	2,050	1,563
합 계	64,278	12,087	22,006	18,440	6,523	5,22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입법조사처 화신자료」, 2024.1.

97) 9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6년 53.8대 1에서 2023년 22.8대 1로 급격히 낮아진 바 있으며(인사혁신처, 「국회입법조사처 화신자료」, 2023.6.), 2024년에는 21.8대 1을 기록하였음(JTBC,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 21.8대1...32년 만에 최저치」, 2024.1.25.).

98) 저연차 공무원의 범위는 최근 해남군의회에서 발의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그 범위를 근무경력 5년 이하로 정의한 사례(윤재철, 「해남군의회 서해군 부의장 저연차공무원 지원조례 대표발의」, 『해남뉴스』, 2024.1.25.)를 참고하여, 입직 후 5년 이하의 공무원으로 보기로 함.

Ⅱ 저연차 공무원의 일반퇴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퇴직자(A)	37,981	47,319	44,676	54,993	57,163
신규임용퇴직자(B)	6,500	9,009	10,426	13,032	13,566
비율(B/A)	17.1	19.0	23.3	23.7	23.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4.1. 재구성.

-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3.7%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과도한 공직 쏠림 현상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를, 장기적으로는 공공조직의 대외적 위상하락과 함께 우수인재 확보 곤란으로 인한 공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⁹⁹⁾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①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②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 문화 간의 괴리, ③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¹⁰⁰⁾ 이에 대해 2024년 3월, 정부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으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99) 박예종·오윤정·윤창근, 「공무원 이직의 세대별 영향요인 비교」,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2023, p.362.

100) 조종오,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이슈와 논점』 제220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세부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 근속승진 개선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특별승진사유 추가 •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 인사교류기간 확대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 육아시간 확대 • 가족돌봄휴가 확대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대체휴무 권고
3.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역량개발 여건 제공 • 연수휴직 기간 확대 • 민·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폐지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 재해예방 체계 확립 • 마음건강 보호 •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 민원공무원 우대
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6.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 급량비 인상 • 행사 차출 경비기준 표준화 •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mois.go.kr/>>.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문제의 근원은 수당이 아닌 보수라는 점, 승진 최저연수 단축 조치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 실질적인 인력 충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¹⁰¹⁾

101) 김영원, 「알맹이 없는 공무원 업무 개선책...현장은 '씨늘'」, 『아시아경제』, 2024.4.1.

2 개선방안

- 정부에서는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에 대해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대응한 것은 다행이나, 우수인력 유출 및 유입 단절로 인한 공공부문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직이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당이 아니라 보수 수준이기 때문에 하위직이나 민원대응 공무원 중심으로 보수 수준을 우선적으로 인상하여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¹⁰²⁾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에게 공정한 보상과 더불어 멘토-멘티 프로그램, 유연근무제도, 여가활동, 승진 속진제도 등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매력적인 인사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부터 바꾸는 한편, 악의적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조종오

☎ : 02-6788-4564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 : 044-201-85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성과급여과

☎ : 044-201-8393

102)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8월 공직문화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든 빠른 수준으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¹⁰³⁾
- 2024년 7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고,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각각 개별 근거 법률 등에 따라 정년을 정하고 있음

Ⅰ 공무원별 정년 및 법적 근거 Ⅰ

구 분		정 년	법적 근거
일반직 공무원	국가직	• 60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직		「지방공무원법」 제66조
특정직 공무원	교육직	• 62세(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65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경찰직	• 60세(경정급 이상 계급정년 有)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소방직	• 60세(소방령 이상 계급정년 有)	「소방공무원법」 제25조
	검 사	• 63세(검찰총장은 65세)	「검찰청법」 제41조
	군 인	• 각 계급에 따라 다른 연령 정년이 적용 •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등 • 기타 별도의 근속 정년과 계급정년 有	「군인사법」 제8조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은 60세, 다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law.go.kr/>>.

- 특히, 정부는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¹⁰⁴⁾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됨으로써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발생하게 되었음

103) 심동철·이한나,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0.8., p.1.

104)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개인이 매월 부담하는 기여금의 비중을 높이고, 연금지급율을 인하여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해 매년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임.

Ⅰ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연 도	개시 연령	연 도	개시 연령	연 도	개시 연령
2016-2021년	60세	2024-2026년	62세	2030-2032년	64세
2022-2023년	61세	2027-2029년	63세	2033년-	65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

- 이에 정부는 당초 민간과 공직 내·외의 정년 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2022년 퇴직자부터 소득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¹⁰⁵⁾
- 향후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공무원 정년은 국가의 인사제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점, 공무원 수급연령과 정년 간에 공백이 없는 점은 공통적이었음¹⁰⁶⁾
-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를 통해 공무원의 정년을 폐지하였고, 일본은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음. 또한, 독일은 공무원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정년의 의미가 없음

2 개선방안

-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긴밀하게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양자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년 60세를 연금수급 시점과 동일하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¹⁰⁷⁾

105)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따라 공무원의 소득공백 보완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3년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2023년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106) 심동철·이한나, 앞의 같은 자료.

107)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도 2031년 이후에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이미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3호, 국회예산정

-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연금수급 기간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을 일괄적, 단계적, 선택적 정년연장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¹⁰⁸⁾,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 등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계급정년이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 정년이 62세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민간분야의 정년¹⁰⁹⁾, 신규공무원의 채용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이와 함께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¹¹⁰⁾와 재고용제¹¹¹⁾ 도입에 대한 논의시 재정 절감의 규모, 공무원의 사기,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공무원 인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¹¹²⁾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조종오

☎ : 02-6788-4564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 044-201-8410

책처, 2023, p.94.).

- 108) 일괄적 정년연장은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방식을, 단계적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 수급연령 연장에 맞추어 공무원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적 정년연장은 조직에서 근무 연장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말함.
- 10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110) 임금피크제는 예산절감,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음.
- 111) 재고용제는 정년연장 시 공무원 개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함께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임. 다만, 정년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사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크고 대상 공무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음.
- 112)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정년연장은 범국가적인 인구 정책 차원에서 민간 부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민간과의 형평성,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재정 규모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인사혁신처,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

경찰청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수많은 경찰 인재를 배출해왔으나, 최근 들어 6년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조기에 퇴직하는 경찰관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대학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¹³⁾
- 특히, 경찰대학은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실제로, 경찰대학 출신 입직자 등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입직자 중에서 214명이 퇴직했는데, 이는 전체 입직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Ⅰ 경찰대학 출신 입직자 등 현황 Ⅰ

(단위: 명,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입직자	1,068	116	120	116	117	119	96	99	94	99	92
재직자	854	80	88	90	100	96	74	81	66	93	86
퇴직자	214	36	32	26	17	23	22	18	28	6	6
비율	20.04	31.03	26.67	22.41	14.53	19.33	22.92	18.18	29.79	6.06	6.52

주1: 퇴직자는 입직자 중 재직자를 제외한 인원수를 의미함.

주2: 연도는 배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4년 재직자는 '14년도 입직자 중에서 현재 남은 재직자 수를 의미함.

주3: 비율은 입직자 중 퇴직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경찰청, 「연도별 경찰대 출신 입직 현황 및 재직자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2.

113) 안혜성, 「'경찰대학 유지 VS 폐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법률저널』, 2024.5.30.

-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찰대학 출신 퇴직자는 149명(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¹¹⁴⁾
- 2024년도에는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 중 4.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로스쿨 설립 이후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¹¹⁵⁾

■ 이에, 2022년 9월 6일, 경찰대학 개혁 등 경찰과 관련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들을 한시적으로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찰대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임¹¹⁶⁾

2 개선방안

■ 첫째, 경찰대학 폐지방안이 있음

-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출신 이탈률 외에도 ① 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 ②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¹¹⁷⁾
- 또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6급¹¹⁸⁾으로 자동 보임된다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이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음¹¹⁹⁾
 - 참고로, 경찰대학과 유사하게 전문적인 세무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세무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국세청과 재무부, 관세청 등에 8급으로 자동 임용되었으나,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국세청 고위직에 대거 포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1년 해당 대학은 폐지되었음¹²⁰⁾

114) 경찰청, 「경찰대학 출신 조기 퇴직자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27.

115) 이상연,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지속 증가…로스쿨 진학 왜?」, 『법률저널』, 2024.4.11.

116) 김성곤, 「《프리즘》출범 2년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개혁 문제 못 풀고 다람쥐 쳇바퀴」, 『공생공사』, 2024.5.29.

117) 박우영, 「경찰대 폐지냐 존치냐…현장 의견 수렴하는 경찰제도발전위」, 『뉴스1』, 2024.5.29.

118) 해당 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7급으로 자동 보임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찰대 졸업 후 보임되는 '경위'는 6급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수정하였음.

119) 심진용, 「이상민, '경찰대 폐지' 질의에 "특정대학 졸업했다고 7급 자동 보임은 불공정"」, 『경향신문』, 2022.7.26.

120) 정민승, 「이상민이 '불공정' 짚은 경찰대, 세무대학 전철 밟나」, 『한국일보』, 2022.7.28.

- 둘째, 경찰대학 폐지에 대한 이견이 많은 만큼, 경찰대학 특혜 폐지 및 학장 개방직 채용 등의 경찰대학 개혁방안도 있음
 - 경찰대학 졸업자가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경위'에 보임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찰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경위'를 자동 보임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간부 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해외에서는 경찰대학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시험을 치고 '순경'으로 입직하는 등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¹²¹⁾
 - 다음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기제를 도입하여 대학 운영의 전문성·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경찰대학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대학장 직급(치안정감)과 경찰청 내 타 개방직 직급(감사관·경찰병원장, '나'등급) 및 담당 직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위공무원 '가'등급 이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학비 전액지원제도를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하고, 일정 부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음
 - 참고로, 해당 개혁방안은 이미 2018년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들임¹²²⁾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 02-3150-0930

121) 김성진, 「대학입시 잘 보면 6급공무원…」무시험-간부 자동임직 외국에는 없다」, 『머니투데이』, 2022.7.30.

122) 경찰청, 「경찰개혁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4.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정원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¹²³⁾
- 2023년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로 국내에 송환한 범죄자 수는 470명으로, 이는 2019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고, 이 중에서도 사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기는 2019년 대비 54%가 증가한 수치로 확인되었음

■ 최근 5년간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로 국내에 송환한 범죄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총계	사기	횡령 배임	폭력	살인	성범죄	강도	마약	절도	특가법	도박	기타
2019	401	166	9	16	5	13	1	26	3	1	117	44
2020	271	110	14	8	1	9	3	19	7	4	70	26
2021	373	170	12	18	3	14	7	22	9	4	91	23
2022	403	187	10	20	1	12	1	34	6	1	107	24
2023	470	256	21	17	4	14	3	26	6	5	71	47

자료: 경찰청, 「인터폴 공조수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4.26.

- 국제공조의 경우 국가마다 문화가 달라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최종별로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특징으로 범죄인의 동태를 파악하더라도 국제공조 수사 개시가 몇 달씩 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¹²⁴⁾
-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기업 SNS라고 하더라도 국제공조에 즉시 협조하고 있지만, 일반 모욕죄나 사기죄 등의 경우는 인력을 그만큼 배분하지 않고 있어 사기업이 연관된 경우에 국제공조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국가마다 기소할 수 있는 죄명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서 국제공조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¹²⁵⁾

123)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마약·금융사기 등 「최종별 공조」 중심으로 국제공조 강화」, 2024.1.31.

124) 하혜영·임준배·김가은, 「프랑스 국외출장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4, p.24.

125) 하혜영·임준배·김가은, 앞의 같은 자료, p.24.

2 개선방안

- 타국의 상황적인 특성에 따른 애로사항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 나라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파견을 통해서 해외 주재 협력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은 해외 주재협력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인력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인터폴 파견 협력관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3년의 파견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청은 현재 인터폴 본부 1명과 싱가포르 지사 2명으로 총 3명의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이 중 1명(총경)만이 별도 정원일 뿐, 나머지 2명은 비별도 정원으로 1년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파견연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처럼 1년씩 파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우호관계를 탄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한 협력관들에게는 업무에 전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에 대한 부담감까지 클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⁶⁾
- 또한, 사기수사와 피해회복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등 여러 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이며,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만큼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은 모두 사이버이용 금융범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기간에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집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과의 사기정보 교환은 중요한 부분임¹²⁷⁾
-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 3월부터 안티스캠센터(Anti Scam Center)가 운영되어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와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126) 하혜영·임준배·김가은, 앞의 같은 자료, p.29.

127) 고철수, 「민생을 위협하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 논의」,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자료, 김용판 의원실, 2023.3.23., pp.54-55.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 : 02-3150-0381

황색신호 딜레마존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4월 12일,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주행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황색신호 딜레마존¹²⁸⁾’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음
- 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25일,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시속 약 61.51km로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음¹²⁹⁾
-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서는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¹³⁰⁾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별표 2]¹³¹⁾에서 정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¹³²⁾

128) 황색신호 딜레마존(Dilemma Zone)이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함(정경일, 「[자동차와 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동아일보』, 2024.5.14.).

12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130) 인천지방법원 2023.12.22. 선고 2022노4780 판결.

131)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황색의 등화’에서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3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 이번 판결에 대해 교차로 한 가운데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화물차량 등 후방차량에 추돌 위험이 크다며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³³⁾

2 개선방안

-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경기 의정부시 1개소 이외에 대구 달성군(1개소)·충남 천안시(2개소), 총 4개소에서 '23년 10월 말부터 시범운영하였음¹³⁴⁾
 - 이에 대해 경찰청은 추후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 및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경찰청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다만, 이 신호기는 2003년에 한 차례 심의하였으나 교통사고 유발 우려 등으로 검토를 중단한 바 있으며¹³⁵⁾, 남은 시간을 보고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사고 발생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¹³⁶⁾
 - 따라서, 경찰청은 해당 신호기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심중한 검토 후에 도입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레이더 검지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레이더 검지기는 신호등 위에 달린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서 교차로 쪽으로 달려오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여 차량이 정지선에 너무 가까울 때 갑자기 황색등이 들어올 것 같으면 기존 20초간 들어오는 녹색등의 신호를 1~3초가량 연장해 주는 시스템임¹³⁷⁾
 - 이 레이더 검지기는 신호등 위에 있는 레이더를 바닥으로 쬔 때 차량에 부딪혀 돌아오는 레이더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돌아오는 신호의 개수를 파악해 차량의 크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133) 김범주, 「“현실 물라” vs “속도 줄여야”…‘황색등 정지’ 대법원 판결 이유는?」, 『KBS뉴스』, 2024.5.15.

134) 경찰청, 「황색신호 딜레마존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25.

135) 장나래, 「[단독] 차량신호등도 ‘잔여시간’ 표시…시범운영 뒤 득실 평가」, 『한겨레』, 2023.7.19.

136) 이정환, 「[단독] 노란불 2초 남았는데도 가속페달… “사고 날까 아찔” [밀착취재]」, 『세계일보』, 2024.4.2.

137) 박세용, 「“운전자 모르게 녹색등 3초 연장”…‘딜레마’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 『스브스프리미엄』, 2024.6.1.

- 국내에서 해당 검지기를 연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 교차로’가 설치된 경우는 추가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신호제어 알고리즘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스마트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신호등에서는 100~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음¹³⁸⁾
- 따라서, 해당 검지기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호등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교통안전과

☎ : 02-3150-3216

138) 박세용, 앞의 같은 자료.

기동순찰대 실효성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은 잇따라 흉악범죄가 발생하자 일선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 신설 등을 포함하는 경찰조직 개편에 나섰으나, 현직 경찰관들은 기동순찰대 신설 등 경찰조직개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³⁹⁾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 소속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조직개편에 대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률이 88.2%(3,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¹⁴⁰⁾
 - 기동순찰대 운영에 따른 가시적 예방순찰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에 89%(3,664명)의 응답률을 보였음¹⁴¹⁾
- 특히, 기동순찰대의 경우 2014년에 처음 신설되어 운영되었다가 2016년에 실효성 문제로 지역경찰에 흡수·폐지되어 2024년에 다시 신설된 상황임¹⁴²⁾
 -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되었던 기동순찰대가 실효성 검증 없이 다시 출범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다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상황임¹⁴³⁾
- 또한,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의 업무가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어 업무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¹⁴⁴⁾ 과 함께 기동순찰대가 지역경찰과 달리 주간에만 순찰하고 있고 저녁 및 새벽시간대에는 여전히 지역경찰이 순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는 사항임¹⁴⁵⁾

139) 황지향, 「경찰관 88%, 조직개편 불만족…"기동순찰대 폐지해야"」, 『THE FACT』, 2024.4.18.

140)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조직개편 추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내부자료, 2024, p.1.

141)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앞의 같은 자료, p.2.

142) 경찰청, 「기동순찰대 등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27.

143)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앞의 같은 자료, p.2.

144) 이진혁,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5.9.

145) 김경수, 「주말·새벽 2시까지만 순찰 한다는 기동순찰대…'전시 순찰대' 논란 여전」, 『전북일보』, 2024.5.7.

■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의 업무활동 비교 ■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자료: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2 개선방안

- 기동순찰대가 재출범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동순찰대의 효과성 분석 근거를 토대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이미 10년 전 경찰청 발주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
 -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경 방범순찰대를 활용한 순찰실험지역 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는 향상되었고, 절도범죄 피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¹⁴⁶⁾
 - 하지만, 공식범죄통계 분석에서는 순찰 실시 전후 실험지역과 통제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2 신고사건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¹⁴⁷⁾
- 또한, 지역경찰과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순찰활동 시 순찰활동 장소와 근무방침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경찰서 소속으로 지역단위 치안활동과 차량 위주의 순찰을 하고, 기동순찰대는 지역경찰 경계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도보 위주의 집중순찰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지역경찰이 112신고 대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기동순찰대가 보완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임¹⁴⁸⁾

146) 탁종연·노성훈·윤일홍, 『취약지역(Hot Spot) 집중 순찰 방식의 범죄예방효과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3, pp.129-130.

147) 탁종연·노성훈·윤일홍, 앞의 같은 자료, pp.129-130.

148) 경찰청, 앞의 같은 자료.

- 하지만, 기동순찰대는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06시부터 24시 내에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새벽과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시기별·장소별 치안수요에 맞게 집중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 도입된 기동순찰대의 도입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임
 - 일부 지방청에서는 야간순찰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동순찰대의 근무시간을 심야시간대로 변경하여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현재의 기동순찰대 근무체제를 개편하여 근무시간을 취약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미 지역경찰이 순찰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까지 순찰활동을 더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순찰활동을 설명하는 마요네즈 이론(Moyonnaise Theory)¹⁴⁹⁾에 입각하여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순찰활동 시 장소 및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 02-3150-1317

149) 경찰의 순찰력의 수준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마요네즈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마요네즈'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론으로, 순찰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 순찰을 시행하면 범죄감소에 효과가 있으나 이미 순찰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약간의 순찰력의 강화만으로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노호래,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 예방효과간 상관관계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2006, pp.52-5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가 68세로 알려지자 고령 운전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⁵⁰⁾
-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 사고건수 중 1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23년에는 19.98%로 가장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음
 -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대비 2023년의 발생 건수가 감소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교통사고 건수	229,600	209,664	203,130	196,836	198,296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	33,239	31,072	31,841	34,652	39,614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비율	14.48	14.82	15.68	17.60	19.98

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경찰통계자료를 활용,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는 가해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인 경우를 경찰청으로부터 화신받은 내용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현황」(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5.jsp>>;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7.9.

150) 이효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다 해결되나」, 『주간경향』, 2024.7.15.

2 개선방안

-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¹⁵¹⁾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실증적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건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크게 시간대(주간 또는 피크타임(16시-19시) 외), 공간적 범위(주택으로부터 반경 20마일 내), 고속도로 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¹⁵²⁾
 - 일본에서는 2022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이 개정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¹⁵³⁾가 장착된 서포카(サポカー) 한정면허가 신설되었음¹⁵⁴⁾
 - 다만, 이 경우 대중교통이 빈약한 교통 소외지역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며, 노인 차별이나 혐오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반발에 따라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조건부 운전면허제에 대한 정정발표를 한 바 있음¹⁵⁵⁾
- 또한, 운전과 관련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능력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운전자와 고령운전자 간의 운전능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 집단 내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별 운전능력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¹⁵⁶⁾

151) 조건부 운전면허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면허를 의미하며, 신규 운전자의 면허를 비롯하여 고령 운전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제한된 운전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기간 동안 제한사항과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임 (김은영 외,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5호, 2023, p.218).

152) 윤일수 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운전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수립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경찰청, 2020, p.58.

153)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운전자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위험 상황을 ADAS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장치로,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이 스스로 핸들과 제동시스템을 제어하고 차선과 속도를 유지하며 갑작스러운 장애물의 등장에도 대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윤일수 외, 앞의 같은 자료, p.68).

154) 구혜경,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7호, 국회도서관, 2022, p.6.

155) 우한솔, 「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특정 연령층만 대상 아냐」, 『KBS뉴스』, 2024.5.21.

156) 정미경·정민예,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능력 분석: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시스템(Senior Driver Assessment System; S-DAS)을 활용하여」, 『교통연구』 제26권 제4호, 2018, p.12.

- 하지만,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능력을 완전히 변별하기 어렵고, 획일적인 운전 제한은 고령자의 이동성 제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별로 운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⁵⁷⁾
- 해외에서는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으로 운전적성을 판정하기 위해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의료자문위원회(Medical Advisory Board; MAB)를 운영하여 관련 대상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이나 개개인의 사례를 검토하고, 검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 의학적 상태 및 운전능력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고 있음¹⁵⁸⁾
 - 영국에서는 혈압, 안검경련, 백내장, 당뇨병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의학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¹⁵⁹⁾
 - 현재, 국내는 신체장애, 뇌전증, 약물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 등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황반변성 안질환이나 기면증, 중증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환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¹⁶⁰⁾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 : 02-3150-0607

157) 정미경·정민예, 앞의 같은 자료, p.13.

158) 이자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22, p.170.

159) GOV.UK, *Check if a health condition affects your driving*(최종 검색일: 2024.7.15.),
<<https://www.gov.uk/health-conditions-and-driving/print>>.

160) 김은영 외,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5호, 2023, p.230.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내실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은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제¹⁶¹⁾ 활용 일반임기제를 채용하여 조직목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직렬)의 결정 등에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경찰청에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상정한 채용분야의 목표 선발인원은 매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처음 채용이 시작된 2018년의 미달률이 41.23%였던 데에 비해 2021년의 미달률은 68.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의 미달률은 62.80%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채용현황 ■

(단위: 명, %)

구 분	'24년 상반기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선발예정	293	416	1,027	333	370	456	861
선발인원	109	201	608	104	145	184	506
미달인원	184	215	419	229	225	272	355
미달률	62.80	51.68	40.80	68.77	60.81	59.65	41.23

자료: 경찰청,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채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14.

- 한편, 2021년 수사권 개혁 이후 수사업무 증가와 더불어 서류 복사와 통계관리 등의 행정업무도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전국 177개 경찰서에 212명¹⁶²⁾의 일반행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였음¹⁶³⁾

161) 총액인건비제는 주관부처가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행기관별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 각 기관들은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및 직렬·직류의 종류 등에 관한 결정과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이민호 외,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p.12).

162) 2022년에는 최초로 212명을 채용하였으나, 일부 정원을 269명에서 254명으로 조정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하였음(경찰청,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채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14.).

163) 이소현, 「수사 경찰' 역량 키운다...인력·예산 대폭 확충」, 『이데일리』, 2023.1.17.

- 하지만, 경찰청은 최초 채용 계획이었던 212명에서 254명으로 정원을 증원까지 하였으나, 현재, 현원(171명)은 정원에 비해 32.7% 부족한 상태로 확인되어 인력 충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수사지원 인력(행정 8급)의 인력 예산규모는 임기제공무원 8급의 연봉한계액(55,175천원)을 기준으로 약 14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음¹⁶⁴⁾

2 개선방안

- 경찰청은 채용 계획에 부합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목표한 채용 인원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서의 선발인원을 감축하고, 다른 필요분야로 선발인원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연속하여 업무 수요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총액인건비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할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총액인건비 제도상 같은 분야의 인력 증원을 최대 4년(2+2)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4년 이상 연장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원은 없으나, 임기 만료 시점에서도 업무 수요가 존속하는 경우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여 수요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연속하여 업무 수요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총액인건비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속 채용하기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할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동일 부서에 유사한 업무로 5년 이상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가 운용된 사례는 총 25개 분야로, 정원이 41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¹⁶⁵⁾
 - 연속적인 업무의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 능률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164) 경찰청, 「총액인건비제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6.28.

165) 경찰청, 앞의 같은 자료.

- 또한, 경찰청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최대 4년만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채용은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대신에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공고한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채용분야를 살펴보면, 치안데이터 분석이나 멀티미디어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분야는 2023년¹⁶⁶⁾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제는 해당 분야의 임기만료일이 2024년 12월 말인데, 공시된 면접 예정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5월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약 8개월만 근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¹⁶⁷⁾
 - 참고로, 2018년에 처음으로 채용된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인력 500명은 채용 당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거쳐 기한이 도래한 2021년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입사 후 반 년 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경찰청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⁸⁾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 02-3150-1151

166) 경찰청, 「2023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2023, p.2.

167) 경찰청, 「'24년 제1회 경찰청(본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2024, p.30.

168) 김태형, 「[단독] 경찰청, 임기제 직원 500명에 "연말까지 나가라"」, 『JTBC news』, 2021.12.10.

지역경찰 인력 조정 및 충원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에 12만 명이었던 경찰의 정원은 매년 인력을 증원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13만 명이 넘게 증가한 반면, 일선에서 112신고처리와 주요 치안수요 발생 시 조치·지원 등 종합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¹⁶⁹⁾은 전체 경찰인력 증가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경찰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 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1,300명이 넘는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경찰 인력 정·현원 ■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원	49,259	49,808	50,236	50,668	50,641	50,594
현원	49,241	50,553	51,360	49,631	50,624	49,233
전년대비 증감	-	1,312	807	-1,729	993	-1,391
결원	18	-745	-1,124	1,037	17	1,361

주: 2023년 정원은 10월 기준, 2023년 현원은 9월 기준.

자료: 경찰청, 「지역경찰 인력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12.26.

- 참고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경찰 순찰팀의 적정인력은 5만3,998명으로, 현원에 비해 부족한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¹⁷⁰⁾
- 또한, 112신고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지역경찰관들이 고연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함
- 2023년 지역경찰 현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 지역경찰 중 37.4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5세 미만은 전체의 29.7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69)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로 경찰서 소속으로 지역 단위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170) 정웅, 「지역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및 적정 인력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p.59.

- 특히,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35세 미만이 차지하는 지역경찰 현원이 감소한 반면 (32.95%→29.72%),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31.31%→37.43%), 특히 2023년에는 지역경찰 중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20.04%)

Ⅱ 지역경찰 연령별 현원

(단위: 명,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5세	55세 이상	계
'18	현원	8,992	7,232	5,722	4,151	7,729	9,241	6,174	49,241
	비율	18.26	14.69	11.62	8.43	15.70	18.77	12.54	100.00
'19	현원	9,478	7,922	5,730	3,901	7,085	9,569	6,868	50,553
	비율	18.75	15.67	11.33	7.72	14.01	18.93	13.59	100.00
'20	현원	9,966	8,161	6,004	4,154	6,382	9,469	7,224	51,360
	비율	19.40	15.89	11.69	8.09	12.43	18.44	14.07	100.00
'21	현원	8,057	7,751	5,926	4,148	6,417	9,495	7,527	49,631
	비율	16.23	15.62	11.94	8.36	12.93	19.13	15.17	100.00
'22	현원	8,219	8,492	6,491	5,012	4,698	9,178	8,534	50,624
	비율	16.24	16.77	12.82	9.90	9.28	18.13	16.86	100.00
'23.9	현원	6,773	7,858	6,634	5,276	4,267	8,561	9,864	49,233
	비율	13.76	15.96	13.47	10.72	8.67	17.39	20.04	100.00

자료: 경찰청, 「지역경찰 인력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12.26.

2 개선방안

- 지역경찰 인력 충원을 검토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경우 기존 경찰공무원 중 내근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경찰청은 행정 및 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부서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인력으로 투입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조직개편안은 기존 '수사심사관 제도'를 폐지하여 그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했다는 경찰청 의견을 확인하였을 뿐, 경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내근부서로 일컬어지는 경무와 정보화장비 등의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경무기능을 포함하는 내근인력에 배치된 경찰공무원을 현장으로 배치하고, 기존 행정업무를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경찰청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경찰청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급여, 후생, 복지, 청사관리, 유무선 통신, 전산, 방비 등 법 집행 업무와 1차적 관련성이 낮고 일반직에 적합한 업무분야에 상당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 경찰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업무가 숙달될 즈음 다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음¹⁷¹⁾
 -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일반직 역할 확대를 통한 치안현장 인력 증원에 관한 토론회(‘17.11.27.)¹⁷²⁾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낸 바 있음
 - 2018년에는 경찰청에서 인사제도 개혁 추진 TF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현장과 관련이 적은 내근 직위를 중심으로 일반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하였음¹⁷³⁾
 - 아울러, 2019년에는 ‘경찰서 일반직 대체 시범실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운영지원 등 보편적으로 타부처에서도 일반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무기능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 계획을 세운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¹⁷⁴⁾
 - 하지만, 현재는 경찰 내근직 업무에 일반직을 전환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가은

☎ : 02-6788-4562

관련부처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 02-3150-1152

171) 이상수 외, 「경찰 직무별 직종 적합성 분석을 통한 경찰직과 일반직간 정원대체 추진 방안」,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7, p.73.

172) 주최(유민봉 의원), 주관(한국행정학회, (사)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공공신회연구원).

173) 경찰청, 「경찰서 일반직 배치 시범운영 실시 경과 및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11.20.

174) 연구는 최종적으로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시범운영 되지 못하였음.

소방청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도봉구 아파트 화재(2023.12.2.), 군포시 아파트 화재(2024.1.2.) 등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압이 매우 중요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들이 화재발생지역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제천화재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등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2018. 3. 27.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2018년 관련법 개정 이후 5년 동안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건), 인천(1건), 충남(1건) 3개 지역에서 총 4건에 불과함
 - 이에 비하여 강제처분 필요상황에 대한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44.3%가 출동 10회 중 3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음¹⁷⁵⁾
 - 이러한 결과는 강제처분, 손실보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이상으로 소방관의 집행을 주저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175) 국립소방연구원 『소방현장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 분석보고서』, 2020.

- 강제처분 집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 이후 소방관이 겪을 민·형사 소송과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 강제처분 대상 차주의 민원제기에 대한 부담, 강제처분 사후 처리과정에서 소방대원 개인의 과실 등으로 밝혀져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부담, 관련 증빙자료 준비 등 추가업무 부담 등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소방의 관련 훈련 및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소방청의 「강제처분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동조치 요구 → 이동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 지휘대장의 지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강제처분의 조건을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춘 경우’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강제처분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¹⁷⁶⁾, ‘행정종합배상 공제’¹⁷⁷⁾ 등이 운영 중이나, 강제처분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보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한계가 있음¹⁷⁸⁾
 - 이에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을 보장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을 우선하는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사례가 많음¹⁷⁹⁾
 -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은 배제하는 방안¹⁸⁰⁾이나,

17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17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

178) 두 제도는 고의에 의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강제처분과 같이 공무원의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장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179) 김중권, 「유럽국가의 국가배상 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9, p.36 참고.

180) 정하중,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학』 제9권 제1호, 2007, p.127; 김중권, 앞의 글, p.37 등.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¹⁸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방관서장과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강제처분 시행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임
 - 현장 소방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태 및 현장영상 공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해 보임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 : 02-6788-4563

관련부처

소방청 대응총괄과

☎ : 044-205-7650

181) 예컨대 공무원 개인책임의 요건으로 고의·중과실에 더하여 '직무행위로서의 품격 상실'이라는 징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박정훈, 앞의 글, pp.58-63 참고.

112·119 신고대응시스템 고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112, 119 신고센터는 범죄, 화재, 구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도움이나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최초의 주요 통로임
- 우리나라 112, 119 신고센터는 시·도 지역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과 소방관이 직접 신고전화를 받아 출동지령을 내리거나 해당부서로 연결해주고 있음
- 하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경찰관, 소방관이 직접 운영하는 112·119 신고체계는 전문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112, 119신고 접수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함
 - 접수 및 지령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상황을 처리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전문성에 대비되는, 접수 또는 지령업무만의 전문성이 별도로 존재함
 - 신고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도 적으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근무기간 1년 정도)을 가지고 있음
- 둘째, 전문(고급)인력의 비효율화 문제가 있음
 - 소방·경찰관 등 현장요원은 모두 전문적인 채용시험과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소방기본법」, 「형법」 등 화재 및 범죄관련 법지식, 각종 소방, 경찰실무, 그리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무도·사격·체포술 등에 관한 특별한 전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¹⁸²⁾
 - 소방·경찰관들을 112·119 접수 및 지령요원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채용과 교육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비효율적인 전문성 낭비가 되는 것임

182) 일반 공무원 시험이 필기와 면접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경찰, 소방공무원은 필기, 면접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체력시험, 적성검사 등도 모두 통과해야 함(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절차: ①필기시험, ②체력시험, ③신체검사 ④인·적성검사, ⑤면접시험).

- 따라서 소방·경찰 같은 전문인력은 채용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비효율적인 조직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신고센터의 경우 주 업무는 신고전화의 접수 및 지령이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인원이 전화접수 및 지령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소수의 관리자만 있으면 됨
- 하지만 112·119 신고센터는 주 업무인 신고전화의 접수 및 지령업무를 여러 계급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급이 존재하다 보니 행정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분장되고 다계층 구조(3계층 이상)를 가지고 있음
- 구성인원 비율에 있어서 순경이나 소방사는 소수이며 신고전화접수 업무수행을 일반공무원 6~7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사~경감(경찰), 소방장~소방경(소방)이 주를 차지하며, 관리자급의 직위가 높고 수도 많은 편임

■ 넷째, 비체계적 신고접수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112나 119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나 신고접수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 상담센터 등에 비해 고도화가 필요함
- 시스템적 측면에서 언어폭력이나 상습 장난전화번호 등에 대한 전화정보 이력관리 및 알람 기능 등 신고전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민간에서는 악성민원, 장난전화 등에 대해서는 주의고객으로 등록하여 장난전화 재발 시, 상담요원에게 주의메세지를 보여주어 장난전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습적인 장난 혹은 언어폭력 전화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음
- 별도의 언어폭력 대응 프로세스나 메뉴얼은 없는 상황임

2 개선방안

- 112·119 긴급전화 신고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112·119 신고센터의 조직구조와 인력구성을 신고센터의 업무수행에 보다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등 수평적인 신분체계를 바탕으로 신고전화대응에 특화된 전문상담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고센터의 주업무인 신고접수 및 지령을 수행할 접수요원을 가능한 한 동일한 직급의 인원으로 선발하여 동일업무는 동일직급이 수행하도록 하고, 소수의 관리자로 하여금 요원관리와 타부서 협의 등 기타 부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긴급전화에 대한 발생을 기점으로 즉각적인 대응과 사후관리(발생, 접촉이력 등 Data 구축 및 활용)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긴급전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¹⁸³⁾ 등을 통하여 신고자의 신고접촉 이력, 발생 지역 등 신고 내용과 처리결과를 DB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고전화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긴급전화전반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한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
 - 또한 긴급전화에 대한 신고접수요원의 전문적인 대응과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고대응지원 프로그램(전산화된 신고대응매뉴얼 및 업무연계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상황에 대비한 긴급전화(112, 119) 신고센터 재난대응매뉴얼 구축이 필요함
 - 긴급전화 신고센터의 위기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112, 119 등 신고센터에서도 재난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9.11테러, 세월호 사고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12나 119로 전화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갑자기 특정지역에 신고전화가 폭주하게 됨

183) 전화와 컴퓨터를 통합한다는 뜻으로 컴퓨터로 직접 전화를 걸고, 받고, 전화에 관련된 정보가 컴퓨터에 자동 전달되고 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예를 들어,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라인으로 전송되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컴퓨터로 전송되어 컴퓨터는 발신자 전화번호로 신고자의 정보를 자동 조회하여 전화를 받기 전에 컴퓨터에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켜줌.

- 이때 112나 119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접수 후 해당기관으로 연락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의 경우 소방이나 경찰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당 지역 사고상황과 사고지역에서의 행동요령(신속한 탈출이나 대피 혹은 현재위치에서 구조대기 등)을 전달받아 신고자에게 적절한 행동요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긴급전화 접수요원 역량 강화 및 언어폭력 및 스트레스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신고전화들에 비해 112·119의 경우 언어폭력전화의 빈도가 많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경찰, 소방관들이 접수함으로써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음
- 112·119 신고접수요원은 신고내용의 특성상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전화가 많으므로 신고전화 처리자체가 상당한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및 치유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욕설,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112·119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특성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 : 02-6788-4563

관련부처

소방청 119대응총괄과

☎ : 044-205-75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문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음
 - 헌법 제114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됐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임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 중 기관장을 비상임으로 임명하는 유일한 기관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직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⁸⁴⁾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므로 대법관 임기 종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¹⁸⁵⁾

184) 박진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16권 제3호, 2023; 이충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방안」, 『법학연구』 제63권 제1호, 2022.

185) 김태홍,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2.

2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호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 또는 정무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에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제12조에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위원장 임명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김용판 의원 (2023.6.9.)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으로 함(제5조제1항 수정)
한병도 의원 (2022.6.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폐지함(제6조제1항, 제2항 삭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함(제12조제2항 신설)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오창룡

☎ : 02-6788-4536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법제과

☎ : 02-3294-8414

국민투표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의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 2014.7.24)
 -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를 시행하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함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입법미비 상태임
-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변경한 사항이 남아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¹⁸⁶⁾
 - 「국민투표법」은 1989년의 전부개정 이후 6차례의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과 2차례의 일부개정만이 있었음.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현재까지 총 105회 개정된 것과 대비됨
 - 「국민투표법」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투표 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준하여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투표권자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에 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의 투표권 유무를 확인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2017.10.

-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내용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정권 및 투표 운동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해야 함¹⁸⁷⁾
 -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투표권 기준연령을 18세로 조정하고, 선상투표제도·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민투표법」은 소형인쇄물을 통한 투표 운동만을 허용하며, 모든 단체의 투표 운동을 금지하는 등 투표 운동의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투표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투표 운동을 금지하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벌칙조항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에 명시된 벌금 기준이 물가상승을 반영하도록 개정해야 함

「공직선거법」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방향

구분	개정 방향	관련 「공직선거법」
참정권 보장	투표권 기준연령을 18세로 조정	제15조
	선상투표제도 도입	제38조
	사전투표제도 도입	제148조
	투표권 행사의 보장 확대	제6조
투표 운동 확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용 등)	제59조
	단체의 투표 운동 허용	제87조
	정당·단체 등의 투표 운동 확대	제61조
	대중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제69조, 제70조, 제82조의7
공정성 확보	투표 운동 주체 제한	제60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설치·운영	제10조의2, 제10조의3
	통신관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조사권 신설	제272조의3
	벌칙 규정의 조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제도 신설	제261조

- 기존 「국민투표법」 관련 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참정권 및 투표 운동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음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됨
 - 향후 개헌 추진 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헌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1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의 글.

「국민투표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대수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21대	백혜련의원 (2020.06.12.)	투표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김영배의원 (2020.07.17.)	-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함 - 투표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함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허용함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투표운동을 제한함 -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함
	박범계의원 (2020.11.04.)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함 - 국민투표 공고일을 별도로 규정함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
	이탄희의원 (2022.01.20.)	투표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유상범의원 (2022.05.11.)	-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함 - 투표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공고함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
	이원욱의원 (2022.12.12.)	-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함 - 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함 -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함 -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 - 국민투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함 - 투표운동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22대	김영배의원 (2024.06.12.)	-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함 - 투표권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함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허용함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투표운동을 제한함 -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함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오창룡

☎ : 02-6788-4536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법제과

☎ : 02-3294-8414

정당 현수막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정당법」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광고물로 홍보하는 행위를 보장하고 있음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함¹⁸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함
 -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게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¹⁸⁹⁾
 - 다만 현수막에 정당 명칭과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시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음¹⁹⁰⁾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게재가 자율화된 이후 현수막 난립에 따른 주민불편 문제가 제기되었음
 - 법률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3개월간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후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¹⁹¹⁾

188) 「정당법」 제37조 제2항.

1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9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191) 임준배·조민주,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210호, 2023, p.3.

-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발생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3개월간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8건 보고되었음. 사고 유형으로는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였음

■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 ■

(단위: 건)

구분	법시행전 (2022.9.~ 2022.12.)	법시행후 (2022.12. ~2023.3.)	구분	법시행전 (2022.9.~ 2022.12.)	법시행후 (2022.12. ~2023.3.)	구분	법시행전 (2022.9.~ 2022.12.)	법시행후 (2022.12. ~2023.3.)
서울	1,645	1,381	울산	213	524	전북	115	719
부산	511	1,269	세종	-	35	전남	183	597
대구	573	985	제주	64	138	충북	134	473
인천	499	872	경기	1,299	3,490	충남	202	451
광주	33	165	경북	156	672	강원	132	572
대전	469	997	경남	187	857	계	6,415	14,197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21.), 임준배·조민주,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2023, p.3에서 재인용.

- 이에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위치 등을 규제하도록 하였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¹⁹²⁾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제8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주변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음¹⁹³⁾
- 정당 현수막의 개수 등을 제한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¹⁹⁴⁾

192) 이지현, 「눈살 찌푸려지는 정당 현수막, 서울도 땀다 ... 국회 법 개정은 안갯속」, 『JTBC 뉴스』 2023.12.14.

1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194) 이연주, 「정당 현수막,..., 규정 위반 13,082개 현수막 정비」, 『서울 타임즈 뉴스』, 2024.3.19.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인 2014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를 벌인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현수막이 발견되었음
- 위반 유형을 보면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의 순이었음

2 개선방안

- 이에 설치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정당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관련 규정의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령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규제한 이후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방법 관련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접수도 줄어드는 추세임. 다만 위반 사례 중 설치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의 자진 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¹⁹⁵⁾
 -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배포하거나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옥외광고물법」 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기간이나 방법 등을 위반시 철거절차 혹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철거규정 등은 없으며, 설치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있음¹⁹⁶⁾
- 미관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 이외의 정당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하지만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제기됨

195) 이연주, 「정당 현수막,,, 규정 위반 13,082개 현수막 정비」, 『서울 타임즈 뉴스』, 2024.3.19.

196)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2항.

-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전자 게시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이정진

☎ : 02-6788-4530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 : 044-205-35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 : 02-3294-836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후보자 및 정당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정치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표현의 자유로서 유권자의 기부 행위를 보장하는 것과 과도한 정치자금 지출이 공직을 돈으로 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사이에서 발생함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정치자금 자체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
- 민주화 이후 정치자금제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2004년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부와 모금 한도를 축소하였으며,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정당 후원회도 금지하였음
-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정당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있음
 -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치자금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음¹⁹⁷⁾
 - 2017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였음
- 정치자금 관련 규제의 완화로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과 정치자금을 통한 국민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¹⁹⁸⁾

197)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8) 유성진, 「현행 정치자금법에 관한 소고」,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발표문, 2023.6.8.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에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37조), 정해진 기한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함(제40조). 그러나 공개 기간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등 정치자금의 공개 및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치자금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제42조 제2항),¹⁹⁹⁾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제42조 제5항)
- 미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정치자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함
- 정치자금의 공개와 관련하여 한국은 회계보고 후 6개월간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공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열람방법에 있어서도 한국이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중앙당 및 그 후원회, 시·도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는 매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²⁰⁰⁾
- 참여연대는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40조와 제42조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수입/지출 발생 직후 신속한 공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정치자금 내역 제공,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 등을 촉구한 바 있음²⁰¹⁾

199) 정치자금 열람 공개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동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5.27. 2018헌마1168.)을 내림에 따라 2024년 법률 개정을 통해 6개월로 공개기간을 확대하였다.

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21.5., pp. 62~63.

201) 참여연대,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분석 보고서: 정치자금 상시·즉각·전체 공개해야」, 2020.9.27.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이정진

☎ : 02-6788-4530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 02-3294-8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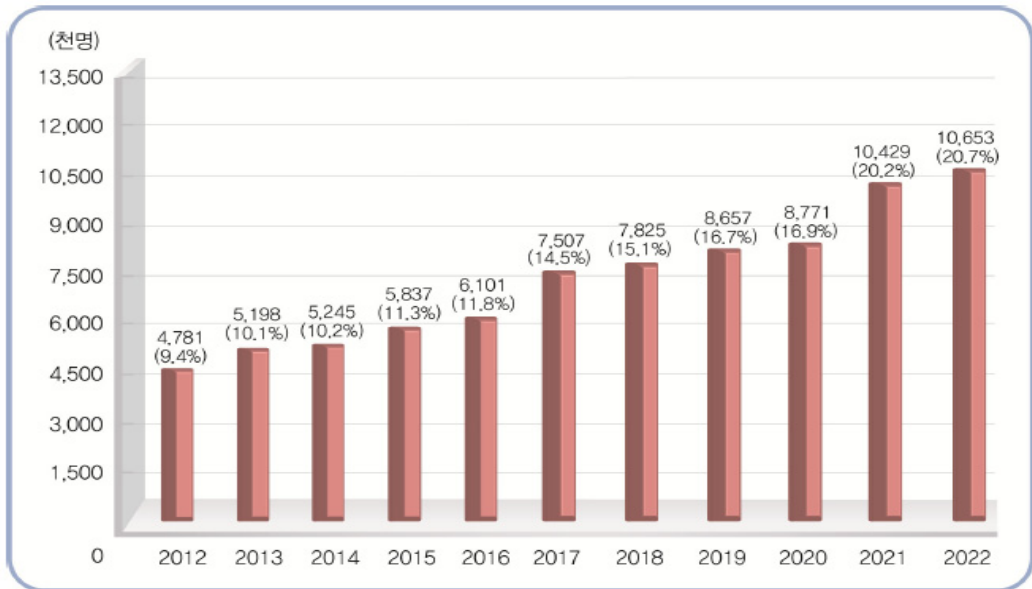
☎ : 02-3294-8526

당원권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당원 수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당원 수는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음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였으나 2022년 20.7%로 늘었음²⁰²⁾
- 2023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4,849,578명(45.5%), 국민의힘 당원은 4,298,593명(40.4%)으로 양대 정당의 당원이 전체 당원수의 85.9%를 차지함²⁰³⁾

■ 최근 10년간 인구수 대비 당원수 변동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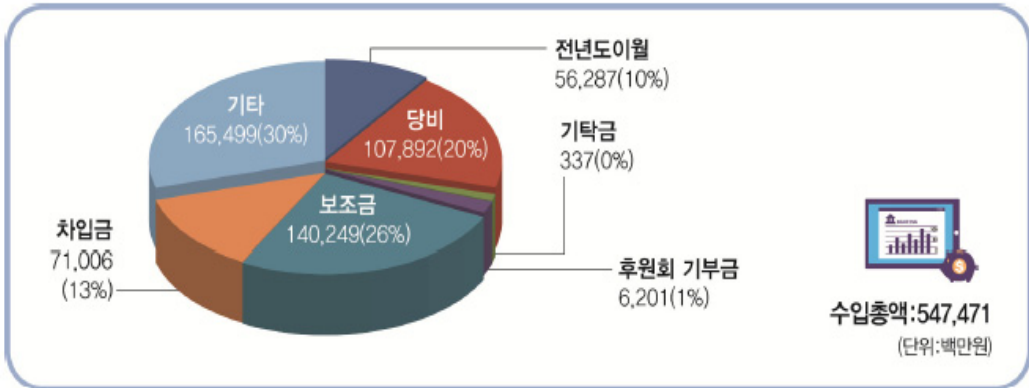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2023.11., p.23.

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2023.11., p.23

2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2023.11., p.13.

- 당원 수의 증가에 따라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음. 정당 수입 중 보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당비는 20%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Ⅱ 2023년도 정당의 수입 총괄 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2023.11., p.487.

*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모든 정당의 수입을 총괄한 내용임.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수입의 14%, 국민의힘은 11%를 당비가 차지함

-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증가하면서 당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최근에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시에도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원권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려도 제기됨
- 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와 더불어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대표적인 당원의 권리로는 당직 혹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권을 들 수 있음
- 당원의 권한 확대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²⁰⁴⁾
- 당원권 강화가 당대표 선출이나 공천 과정에의 참여 등으로 집중되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이슈 선택에 대한 참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도 지적됨
- 당원들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당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았음. 상시적으로 당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²⁰⁵⁾

204) 진선민, 「‘당원권 강화’ 논쟁…‘팬덤정치 심화’ vs ‘민주주의 확대’」, 『KBS 뉴스』, 2024.6.22.; 전해원,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는 정말로 민주적일까」, 『시사IN』, 2024.6.25.

205) 서어리, 「민주당 ‘당원이 핵심, 당원권 확대·강화해야」, 『프레시안』, 2024.5.23.

2 개선방안

- 공직선거나 당직선거에의 참여 외에 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슈 개발 과정에 대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이나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와 같은 신생 정당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당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이나 의제 선정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함
- 당원권 강화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대의원제도 등을 통한 보완도 함께 진행될 때 정당정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²⁰⁶⁾
 - 대의원제도는 지역, 시·도당, 전국 단위에서 구성되는 대의원을 통해 정당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숙의와 교정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가 있음. 대의원제도 없이 전당원 투표 등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로 수렴될 경우 영호남 지역과 같이 당세가 약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기 어려움
 - 영국이나 독일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주요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작 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이정진

☎ : 02-6788-4530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 : 02-3294-8361

206) 윤왕희, 「정당 의사결정구조와 정당개혁 의제」,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발표자료, 2023.8.3.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헌법 제8조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가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전국 단위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으며, 선거에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음(「정치자금법」 제25조~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비용에 대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더불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지출액 전부를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반액을 보전함(「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음
-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총액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의 비교섭단체에게 5%를 배분함. 또한 아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2%를 배분받을 수 있음
 - 국회의석 5석 미만인 정당 가운데 최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 최근 총선에서 2% 득표하지 못했으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
 - 최근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 위의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률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고, 잔여분은 최근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별로 선거보조금을 배분받는데, 선거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후 보전도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됨²⁰⁷⁾
- 제22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92억 원, 국민의힘은 364억 원을 보전받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47억 원, 국민의미래는 49억 원을 보전받았음. 또한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산)이 217억 원,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산)이 205억 원을 배분받았음
- 준연동형 선거제도하에서 위성정당 설립으로 인해 대정당은 추가적인 국고보조금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²⁰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및 선거비용 보전 현황 ■

(단위: 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지역구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9,171,293,100	36,392,686,320
비례대표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4,734,654,690	4,846,384,650
본(本)정당 선거보조금	18,881,284,610	17,723,618,700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2,827,091,700	2,804,433,130
여성추천보조금	244,675,040	195,267,430
장애인추천보조금	92,629,650	83,347,330
청년추천보조금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7) 안재용·민동훈, 「4월 총선 선거보전금 1072억…또 '중복지급'만 수백억?」, 『머니투데이』, 2024. 1. 31.

208) 최평천·한주홍, 「여야 위성정당, 국고 보조금 28억원씩 챙기고 두 달 만에 소멸」, 『연합뉴스』, 2024. 4. 22.

2 개선방안

- 배분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대정당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현행 구조를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율(영국·독일), 의석률(스웨덴), 혹은 득표율 및 의석률(프랑스·일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과 2021년 5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며, 그 잔여분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의 중복 지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취지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이 “국민의 세금이 동일한 목적에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효과를 가져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혜택의 내용을 보면 거대정당은 군소정당에 비해서 지원받는 금액의 중복성이 더 커서 공정한 선거라는 취지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²⁰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허석재

☎ : 02-6788-4531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 : 02-3294-8526

209) 손병권,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미래정치연구』 제5권 제1집, 2015, p.12.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포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의8),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별도의 정의(定義)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²¹⁰⁾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2003. 9. 26. 대법원 판결(2003도2230)에서는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정당의 당직자 선출을 위한 조사,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조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조사, 순수 학술·연구 목적의 조사, 단체 등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 또한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사도 포괄하는데, 이러한 비공표용 조사에 대해 공표용 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²¹¹⁾
 - 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표본 크기와 대표성, 편향되지 않은 질문지 구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내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와 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은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준수가 극히 어려운 실정임²¹²⁾

2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2024, pp.10~11.

211) 이진수 외, 『선거여론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2.

212)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제1항).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08조제12항제1호).

- 다른 한편, 주요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해 활용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만, 해당 조사의 품질은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주요 정당이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광범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많은 실정임²¹³⁾
- 정당이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될 수 없으며, 조사의 목적·일시·방법·표본수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 이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²¹⁴⁾

2 개선방안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거 시점 공론장에서 정확한 여론이 유통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제는 선거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공표·보도 목적이 아니고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까지 사전 신고대상이 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선거여론조사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자체 고시인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심의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
 - 그런데 해당 기준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조). 상위법은 비공표용 조사까지 선거여론조사로 포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은 공표용 조사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모순이 발생함
-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여론조사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고 공표·보도 대상도 아닌바 현행 규제의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213) 박준규, 「거대양당 '경선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내일신문』, 2024.3.18.

214) 현재까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고발 접수된 사례는 없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신 2024.7.10.).

- 이러한 현실에 맞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법령상 선거여론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허석재

☎ : 02-6788-4531

관련부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

☎ : 02-504-0342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치자금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음(「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 매체환경의 변화로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최근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모금활동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음²¹⁵⁾
 - 2019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방송 중에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을 받은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 모집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2023년 11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한 후원금을 받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었음
 - 2023년 8월 당시 국민의힘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2024년 5월에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음²¹⁶⁾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유튜브가 후원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에 위배됨²¹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은 통상적 광고료 이상을 받게 되면 기부

215) 임춘한, 「이번엔 '유튜브 멤버십'...계속되는 SNS 정치자금 후원 논란」, 『아시아경제』, 2023.11.7.

216) 이울림·박형빈,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로」, 『연합뉴스』, 2024.5.24.

2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최종 검색일: 2024.7.10.), <<https://law.necw.go.kr/necwWqrelnqy1030.do>>.

2 개선방안

- 기술발전과 매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치후원금 모금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²¹⁹⁾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부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기부자들이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후원인과 모금인 간의 상호작용이 장점으로 지목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5월에 IT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의 후원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이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개인방송을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서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소셜미디어 업체는 약관상 수수료를 제외한 후원금과 후원인 인적사항을 지정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권자는 해당 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도록 함. 후원회는 지정권자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함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허석재

☎ : 02-6788-4531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 : 02-3294-8526

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2022.

219) 박혁진, 「소셜 미디어 기부도에 대한 융합모델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5(2), 2023, pp.59-121.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조사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선거시점에 난립하여 무분별한 조사결과를 쏟아내는 사례는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충분한 조사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법률상 최소요건만 갖춘 업체들이 표본의 할당관리, 가중값 처리, 조사시스템 운영 등에서 미숙함을 노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²²⁰⁾
- 2023. 7. 31.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 전문인력 수가 종전의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음. 연간 매출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제21대 국회에서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 해당 개정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었고, 2024년 1월 현재 30개 업체가 등록취소 대상이 되었음

연도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현황

구 분	2016 국선*	2017. 5.9.**	2017. 12.31.	2018. 12.31.	2019. 12.31.	2020. 12.31.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2024. 1월.
신규등록	186	27	33	22	7	11	14	13	3	1
등록취소		0	0	3	7	11	9	6	6	30
증감		0	0	19	0	0	5	7	-3	-29
누계		27	60	79	79	79	84	91	88	59

주. * 등록제 시행 전. **등록제 시행일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 내용이 거짓이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등록 신청이 불가함(「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5항)

220) 강석봉,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최 선거여론조사제도개선 공청회 발표자료, 2023.5.3., p.3.

- 그간 선거여론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과 등록 요건 강화 등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심의·조치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선거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 ■

	계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등
제19대 대선(2017)	69	4	-	4	61
제7회 지선(2018)	144	23	5	9	107
제21대 국선(2020)	117	24	1	6	86
제20대 대선(2022)	58	1	-	1	56
제8회 지선(2022)	107	13	6	3	85
제22대 국선(2024)	127	29	2	10	86

2 개선방안

- 그간 국회는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재등록 요건을 세분화·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음
 - 개정안들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거나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임
-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및 재등록을 위한 경과기간 연장은 조사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질 낮은 여론조사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선거기간 여론조사의 오용은 질 낮은 조사의 문제 못지 않게 조사결과의 부정한 활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시행 이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심의·조치 대상은 조사기관보다는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활용한 선거 관계자들인 사례가 많았음
 - 이에 조사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조사결과의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선거여론조사기관 규제 관련 제21대 국회 개정안 제출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10398	이종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함
2113864	김성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 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2116109	홍정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2116413	이명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2년·1년으로 세분화함
2121939	조해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3회 이상)한 경우에 대한 취소사유를 추가함
2122706	전봉민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도입함
2123510	윤준병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
2124801	정동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함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최종 검색일: 2024. 7. 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ProposalResult.do>>.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허석재

☎: 02-6788-4531

관련부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사팀

☎: 02-504-0343

공직선거 투·개표 관리인력 보상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투표소·사전투표소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씩 있음(「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 투표소·사전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이 있으며, 개표소에는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이 있음(「공직선거법」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은행 직원, 공공기관²²¹⁾·지방공사·지방공단²²²⁾의 상근 임원, 그리고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함
 -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함
 -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함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하루 수당은 9만원이며, 개표사무원의 하루 수당은 7만 5,000 원임(「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는 수당 현실화 논의에 따라 2024년 3월에 인상된 것이지만, 15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함
 - 제22대 총선에서 관리관은 사례금 10만원, 사무원은 사례금 4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음²²³⁾

2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을 의미함(「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22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의미함(「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6호)

223) 문희철, 「행안부 "사전 선거 투표지 철저 감시"...투·개표 담당 공무원, 의무 휴가」, 『중앙일보』, 2024.3.6.

- 수당 외에도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가 지적되자, 투·개표 관리 인력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휴무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2조의2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선거일 다음날 휴무이며, 만일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함
- 제22대 총선에서는 투·개표 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휴무가 보장되고, 수당이 늘어나는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투개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사례금을 추가로 받아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할 경우,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며,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사무원의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고정되어 있음
 - 투표관리 인력은 투표 시작 전부터 투표 종료 이후까지 투표소 준비와 투표소 정리까지 맡아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간은 14~15시간에 달함
 - 2022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사무를 맡은 전주시 공무원이 과로로 숨졌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도 남원시 공무원이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 후 숨진 일이 있음²²⁴⁾

2 개선방안

- 투개표 관리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책임성 있는 선거 사무를 위해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투개표 사무원 참여 유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사례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시급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가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에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24만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18만원, 개표사무원 10만원으로 지급 수당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다음과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됨
 - 2022년 11월 23일, 조웅천의원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은 24만원,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 실비를 지급’

224) 정의진, 「"내년 퇴임 앞뒀는데.." 사전투표 투입된 50대 공무원 숨져」, 『KBSNEWS』, 2024.4.9.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2023년 6월 27일, 정희용의원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정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구체적인 절차가 담긴 투표소 사건·사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투개표 관리 인력들에게 배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투개표 관리 인력들의 업무 부담과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²²⁵⁾
- 투·개표 사무원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있음
 - 안정적인 선거사무원 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일반 유권자, 청소년 등으로 위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²²⁶⁾
 - 일반 유권자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또는 지역 선관위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무원 모집을 진행하는데, 이를 개인 유권자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됨
 -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사무원으로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개표사무원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하여 선거권자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투·개표 관리인력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축소하고 일반 시민 모집을 확대할 경우, 투·개표 사무원의 위촉 규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두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개표 사무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음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송진미

☎ : 02-6788-4534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 : 02-3294-0455

225) 이정진,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NARS 입법·정책』 제99호, 2021.

226) 한국정당학회,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인력확보 및 대행사무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22.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사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선택을 조사할 수 있음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구조사는 ‘선거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불가능하며, 언론기관은 전화여론조사 등을 통해 출구조사를 보정하여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있음
 - 전체 투표자 중에 사전투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46~47%에 달함. 사전투표자가 증가하면서 출구조사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출구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출구조사의 정확도 향상,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근거로 함²²⁷⁾
 - 현재 사전투표에 대한 예측은 전화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화 조사는 실제 투표 행위와 다를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음.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들을 별도로 분석해야 출구조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임²²⁸⁾

227) 김승환·최우석, 「사전투표를 높을수록 정확도 ↓ ... 고민 깊은 방송 3사 출구조사 [4·10 총선]», 『세계일보』, 2024.4.9.

228) 문재연, 「사전투표 구멍에 '출구조사' 연신 헛방... 이번 총선엔 믿을 수 있을까」, 『한국일보』, 2024.4.10.

- 사전투표자가 많아지면서 출구조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표심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함²²⁹⁾
- 사전투표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증가했으므로, 출구조사를 통해 사전투표자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가 축적될 필요성도 제기됨
- 하지만,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의 유출 가능성, 조사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출구조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음
 -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에 선거일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²³⁰⁾
 - 아울러, 대통령선거에서는 출구조사 예측결과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제22대 총선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난 것은 254곳에 이르는 지역구에서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음²³¹⁾

2 개선방안

- 「공직선거법」 제167조 등의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소에서의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2023년 2월 28일, 정우택의원은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에 사전투표에서의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다만,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의 유출 가능성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9) 문재연, 「사전투표 구멍에 '출구조사' 연신 헛방...이번 총선엔 믿을 수 있을까」, 『한국일보』, 2024.4.10.

230) 나경희, 「여론조사 잘 읽고 싶다면? 이념 성향 비율부터」, 『시사IN』, 2024.4.29.; 홍수영, 「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 신뢰도 우려」, 『동아일보』, 2017.5.8.

231) 김승환·최우석, 앞의글.

작성 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송진미

☎ : 02-6788-4534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 : 02-3294-0455

장애인 참정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전국 투표율 67.0%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장애인은 여전히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³²⁾
 - 「NMHC 정신건강동향」 제36호에 따르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7차 조사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22년 제20대 대선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7.7%로, 전체 투표율 77.1%에 비해 9.4%p가 낮았음
- 장애인은 후보들의 정책·공약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형 선거공보물’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
 - 청각장애인이 한글로 쓰인 선거공보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선천적 청각장애인 등은 한글보다 ‘한국 수어’가 익숙하여 선거공보물을 능숙하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의 청각장애 학생이 비장애인 초등학교 3~5학년의 문해 수준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음²³³⁾
 - 발달장애인은 외래어, 축약어,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선거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려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용어집’을 제작 및 게시하였지만, 권고에 불과함
-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허용과 관련하여 투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32) 김민지, 「총선 투표율 67% 역대 최고지만…장애인 “여전히 우리에게 험난한 투표”」, 『뉴스1』, 2024년 4월 10일자.

233) 박현주, 「국립중앙도서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법 보장위한 토론회」, 『뉴시스』, 2016년 4월 17일자.

- 투표소에 방문한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하여 가족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투표보조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²³⁴⁾ 투표보조 허용을 거절당한 발달장애인 가족과 투표사무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투표소 현장의 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수어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위한 ‘AI 수어번역’²³⁵⁾ 기술 도입,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인증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AI 수어번역 기술을 통해 수어형 선거공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I가 번역한 수어형 선거공보물을 전문 수어 통역사가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후보자들의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각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사무원들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적인 투표보조 허용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성 자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준형

☎ : 02-6788-4728

관련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 : 044-3294-0455

234) “투표소마다 기준이 다르지 친관동에서 투표를 할 때는 보호자인지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갈현동에서 투표를 할 때는 보호자가 데리고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은평시민신문, “투표소의 장벽, 발달장애인 참정권은 보장될 수 있을까?”, 2024.4.3.)

235) 김대은, 「농인 소통 위한 ‘수어통역사’ 부족, AI로 해결」, 『산업일보』, 2024년 6월 10일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제2부

202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행정안전 위원회	중앙부처	인사혁신처	5	1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	22	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8	8
		행정안전부	63	73	82
		경찰청	134	59	55
		소방청	68	55	40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0	21	71
		부산광역시	14		
		광주광역시		22	
		대전광역시		11	
		울산광역시		20	
		세종특별자치시		6	
		대구광역시	17		6
		인천광역시	18		10
		경기도	14	17	23
		강원도			6
		충청북도		23	
		충청남도	18		12
		경상북도		19	
		경상남도		20	
		전라북도	15		13
		전라남도	10		
		제주특별자치도		26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2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1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1	
		도로교통공단	15	1	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	1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1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각 지방경찰청	218	203	131
	기 타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		
		한국자유총연맹	3		1
		계 (건수)	694	625	49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21~2023)

1 행정안전부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 마련	정부 위원회 조직의 정비 방안 마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2 행정안전부	공공업무 정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352개 공공업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행정지도 필요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공공업무 계획·등록·평가 단계에서 개선 방안 마련	
	3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및 결과를 공개할 것	
	4 행정안전부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5 행정안전부	과거사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주 4·3사건 배·보상액 약 1,000억원이 불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배·보상 진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제주 4·3사건 보상금 2023년도 예산 1,810억원 중 3분의 1인 626억이 지급된 상황으로 원활한 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보상분과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할 것
	6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전수조사, 부정수급 금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것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부정 사용시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7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관련 기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안 마련
	8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 마련, 기금의 배분기준 및 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관리 등 제도 개선
	9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면밀한 점검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1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련할 것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음
	11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금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문제, 부실대출 실태조사, 관리감독 권한 이관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 해결, 조직문화 개선, 이사장·임원의 과도한 권한 축소, 관리감독 권한 이관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2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할 것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마련할 것

2 서울특별시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모아타운사업의 미진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서울특별시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개방적으로 협의할 것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청소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침수 취약지도를 제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현황 파악 및 관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어린이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험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
	5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SH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할 것	SH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경기도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경기도	환경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및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보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배·보상제도 개선	한국전쟁 당시 적대세력에 의 한 민간인 희생 보상 노력
3년 연속	1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 조사인력 확충	과거사 조사인력 보강	진실규명 건수 고려하여 조사 인력 보강

5 재난안전관리본부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사태 방지 대책 마련	산사태 취약지구 중 태양광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통계 를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가 능성을 높이는 산지 설치 태 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원상복구 조 치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침수우려 지하차도 대응방안 마련	전국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자 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홍수위험지도 등을 활용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인사혁신처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인사혁신처	시간외근무수당 공제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시 간외근무수당 공제제도 개선 방안 검토할 것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초과 근무 1시간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2	인사혁신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증가 대책 마련	퇴직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 석을 통해 수당, 보수 인상 등 퇴직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보수 수준 상향 등 높은 청년 공무원 퇴직률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할 것
	3	인사혁신처	정년과 연금지급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연금수령시기 조정으로 인해 소득 공백자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것	정년과 연금 지급시기 불일치 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1	경찰청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	집회에 대한 적시·체계적 대응 체제 마련	집회 관련 소음단속 규제의 미 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소 음 피해 경감하는 방안 마련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 하여 금지가 아닌 제한하는 방 안 모색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 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집회·시위 시 소음기준 및 차 량의 인도 참범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 기 위해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집회·시위를 엄격 하게 관리
	2	경찰청 자치경찰제 안착 노력	한국형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 하여 지역별 차안 수요 등에 따 라 조직개편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하여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도입하 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인 경 찰권 분산이 사실상 체감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3	경찰청 사기범죄 대응방안 마련	사기 등 서민 생활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방안 마련 할 것	영국의 사기범죄분석국과 같 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 축 등 방안 마련	온라인 중고거래 및 게임 아이 템 사기 등 사이버 사기범죄 근 절 대책 마련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 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 해 금융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 대책 마련	사기범죄 관련, 플랫폼과 경찰 간 정보 공유·연계 및 플랫폼 업체의 신고 등을 제도화하는 등 대책 마련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검직실태 재점검		
	4	경찰청 마약범죄 관련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 고 있으므로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구체적 방 안 수립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 응 위한 전담인력 확보, 전문수 사팀 설치, 장비 확충 등 대책 및 해외 공조·대응 방안을 마련	간이시약기로는 신종 마약 검 출이 어렵고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 완책 마련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식약처와 공조하 는 방안 등 대책 마련
	5	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사건 처리 과정에서 스토 킹 행위자의 과거 이력과 사 건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활 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초기 에 구축하고, 스토킹전담경찰 관들이 스토킹 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을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스토킹범죄 전담수사인력 확 보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통 계관리 방안을 마련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군 피 해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인력 과 예산 확충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	6	경찰청 인사운영 공정성 확보 및 효율화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순경 입직자 고위직 진출 방안과 경위 근속 승진 단축 및 시험승진제도 폐 지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총경 승진과 관련한 입직경로 별 승진 및 경력평정기준에 대 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열심히 일한 경찰관들 억울함 없도록 포상하는 등 경찰관 사 기진작 위해 노력 필요
			승진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 게 운영될 방안 마련	경찰청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총경 이상 여성 경찰관 비 율 제고 등 방안 마련	
	7	경찰청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보	청주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 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안 보수사 역량 강화	전담부서(안보수사본부 등) 설 치 및 전문인력·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 노력 필요
	8	경찰청 경찰의 인권침해 요소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신청 현황 통신자료 제공요청 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 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사 관행 개선 경찰의 인권침해, 부당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건수가 매년 다수 발생하 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해외사례 검토 후 외부 시민감시제도 등 방안 강구	신체 촬영 등 채증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 적 기기 사용, 자료의 유포금지 등 대책방안을 마련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진술녹화제 도 등 인권보호 관련 제도 보완	경찰청이 9.21. 발표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권침해적 요소 없는지 재검토
	9	경찰청 국제공조 협력체계 강화	사이버범죄 증가에 따라 유관 정부부처·민간 IT기업과의 협 조체계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마련 사이버테러에 대한 고도화된 전담팀과 전략, 시스템 운영, 국제공조 구축 등 강화된 대책 마련 인터넷 국제공조수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비 성 전시 예산 삭감, 실질적인 사업예산 반영, 이에 대한 성과 지표 명확히 설정해 사업을 추 진할 것	증가하는 사이버 성폭력, 마약 범죄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대 응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전문 수사팀 설치, 장비 확충 등 대 책 방안 및 해외 공조·대응 방 안 마련 증가하는 메신저피싱 및 당근 마켓 등 작가래 사기에 대한 강 력한 대책 및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	해외도피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및 국제적 공 조 강화 등 대책 마련
	10	경찰청 성범죄 등 대응 강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 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 관 상주 및 위험성 평가지표 구 성하여 고위험군 분류하는 방 안 마련 성범죄 담당 경찰관의 역량 강 화, 피해자 조사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	아동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분위장 수사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방 안 마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1	경찰청	노면표시 실효성 확보 및 기준위반 제재 근거 마련 등	기후에 관계없이 노면 표시가 잘 보이도록 하고 있는 차선 관리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	도로 노면표시 도색기준 위반 제재 근거 마련 및 노면표시 반사성능 제고 방안 마련	
	12	경찰청	수사인력 확보 등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범죄 및 경제범죄에 수사인력 재배치	수사전담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인과 수사업무 기피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13	경찰청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관련 사업 강화, 축법소년 제도 폐지 또는 연령 하향 방안검토	소년범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축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노력	
	14	경찰청	징계제도 강화	징계제도 엄격한 운영방안 마련	경찰청 성비위 징계 중 징계양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15	경찰청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강화	신변보호제도 절차 신속하게 진행하여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	신변보호 전담 인력 확보 위해 노력 필요	
	16	경찰청	자율방범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자율방범대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17	경찰청	공상경찰관 사례 조사 및 지원 현실화		경찰관 공상·순직 사례 조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준비	공상경찰관 지원(요양급여, 간병비 등) 현실화 위해 노력 필요 화재감식요원 등 일선 경찰관이 공상추진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18	경찰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강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점검이 그 목적에 맞게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마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확한 신상정보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지 현장점검 강화
	19	경찰청	저위험권총 실효성 등 검토		현장에서의 실효적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저위험권총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사업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도입 계획을 재검토
	20	경찰청	스마트워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구매 등에 차질 없도록 진행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 해결,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위한 적극적 대책 방안 마련	스마트워치 고도화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스마트워치 구입 사업에서 기술능력이 없는 등 비적격 업체가 사업자로 낙찰되지 않도록 업체선정 평가항목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립·구성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

8 소방청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	소방청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대응 방안 마련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는 소홀한 것으로 보임. 소방관들의 안전장비 확보, 대응 방안 등 표준작전절차(SOP) 마련할 것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전기저장시설에 대한 화재진압 장비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마련할 것	
	2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 마련	최근 3년간 전기차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 바 차종별 대응매뉴얼 마련, 장비 확충 등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소화용 관창, 질식소화덮개, 이동용 수조 등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전문장비를 확충하고 전기차 보급 차량 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으로 배차·조장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소방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및 보건안전관리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의 높은 자살률, 스트레스발병률, 화귀병발생률 등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노출이력, 건강진단 결과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활성화하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타 직군에 비해 크게 높는데 이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4	소방청 119안전센터 차고지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전국 119안전센터 차고지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총남은 100%인 반면 총북은 4.7%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하고, 주요 구급장비(심정지, 호흡정지, 호흡곤란 등 긴급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필수장비)의 노후 화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	매연 및 유해가스로 인한 소방대원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119안전센터 매연배출 설비 보급률이 낮은데,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소방청 소방강부 현장경험 부족 대책 마련	소방령 이상 간부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28년 근무기간 동안 출동부서 근무는 평균 6년, 교대근무 기간은 평균 2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방간부들의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청은 어느 기관보다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기관으로 현장경험을 일정기간동안 의무화 하는 등의 인사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할 것	간부후보생 등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제대부 퇴직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장보직 기간 강화 등 인사관리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6	소방청	소방헬기 운용 환경 개선 방안 마련	2020년도 소방헬기의 출동 건수는 5,671건, 비행시간은 5,676시간으로 2011년 대 비 출동건수와 비행시간이 각 각 40%, 35%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헬기조종사 인원충 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8년도 이후 조종사와 정비사 총원율이 70%초반 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소방 헬기 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등의 중장기적 계획 안 마련할 것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는바, 산불 조 기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산불 진화전문차량 및 소방헬기 보 강 대책을 강구할 것	
	7	소방청	소방교육 전문화 방안 마련	현재 전국 시·도별로 소방학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 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내용을 특화시키는 등 교육훈련기관 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소 방교육 전문화를 위해서 소방 전담교관 또는 소방교수요원 확보 검토할 것	소방관의 화재진압, 특수환경 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한 훈 련이 사전에 필요 한데 이를 위한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이 매우 부족하므로, 예산확 보 등 시설확충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일 것	
	8	소방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대책 마련	전체 구급차의 39%만이 자 동경고 및 자동신고 시스템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119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의 장착을 확대 하는 등 대책 마 련 강구할 것	주취자 등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대책으로 구급차에 경보 신고 장치가 설치되고 있고 웨어러블 카메라가 확대 보급 되고 있으나 시·도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개선대책 을 마련할 것	
	9	소방청	화재진압 시 불법주·정차차량 강제처분 적극 실시	화재진압시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형사상, 민사상 소송 지원 확대 방안 마련할 것	화재현장진입 곤란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불법주차 강제처분 을 실시할 것	
	10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방염대책		다중시설에 설치되는 방염시 설이 적절한 방염성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각종 자재에 내 구연한을 정하고 재검사를 받 도록 하는 등 보완대 책을 마련할 것	영화관에 사용되는 흡음제 등 실내장식물 물질 인정제도 도 입 방안을 마련할 것
	11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대응체계 개선		2022년 8월 8~9일 수도권 집중호우기간에 119 신고전 화가 접수되지 못하고 자동응 답전화(ARS)로 연결만 된 건 이 2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19종 합상황실의 화선 부족, 대응 인력의 부족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 경찰 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 교 통통제가 되지 않은 점을 개 선하기 위해 119코드 분류체 계 및 유관기관 통보 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21년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후속조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루어지고 인력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와 화재진압장비 등 시설·장비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해당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는 턱없이 부족한실정이므로, 소방장비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 인건비 및 장비구매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13	소방청	산불 진화체계 (산불진화전문차량 및 소방헬기 보급)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는바, 산불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산불 진화전문차량 및 소방헬기 보급 대책을 강구할 것	위험물질 화재진압과 수재 대응에 효과적인 대용량포방사 시스템 및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산불전문진화차량의 추가 도입계획을 마련할 것	
	14	소방청	구급대원 인력보강 방안 마련	119구급대의 도착시간 단축 및 구급대원의 과도한 업무강도 완화 등을 위해 구급대 대원 인력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구급대 업무부하 과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급인력 총원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년 연속	15	소방청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 화재진화수당 지급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소방공무원 처우가 악화됨.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등 관계부처(인사처, 기재부) 협의를 통해 화재진화수당 지급대상 확대 방안 강구할 것	현장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 수당제도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인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16	소방청	소방본부장 위상 강화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을 검토할 것 인구 160만 및 소방서 12개 지사체의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과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 소방서 2개 이상 단위 지역의 중심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상향조정 방안 강구할 것	소방본부장의 위상 및 경찰청장과의 직급차이를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	시도 소방본부 조직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하여 부분부장, 부장 등 중간 간부 직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일	2024년 8월 19일
발행	박상철
편집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 6788. 4540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 761. 0031

-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nars.go.kr>) '연구 보고서'의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671-9444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2104-1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2104-10

ISSN 2671-944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